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2025. 04.

Blue	관심
Yellow	주의
Orange	경계
Red	심각

환 경 부

목 차

I. 일반사항

1. 목적	2
2. 적용 범위	2
3. 관련 법규	3
4. 용어 정의	5

II. 위기 유형과 관리체계

1. 위기 유형	8
2. 전개 양상	8
3. 국가 위기관리 체계	9
4. 위기관리기구의 대응체계	13
5. 환경부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	37

III. 위기관리 기본 방향

1. 목표	40
2. 방침	40
3.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	41
4. 위기징후 감시	42
5. 위기 평가	45
6. 위기경보와 경보 발령	47
7. 비상근무체계	52

- 이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8685호)제 34조의5,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454호) 및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상황을 상정하고 이에 따른 상황 인지 및 보고·전파, 상황 분석·평가·판단, 조치사항 등 위기대응을 위한 절차·기준·요령과 각종 양식, 보도자료 또는 담화문 예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관련 부처·기관은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책임과 역할에 따라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와 제반 조치사항이 수록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함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

- 이 매뉴얼과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는 이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응하여야 한다.
- 다만,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 재난 유형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것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되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가급적 재난이 발생하면 심각단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경계, 주의 등으로 경보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IV.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1. 관심	54
2. 주의	58
3. 경계	62
4. 심각	66

V. 재난상황별 조치내용 및 절차

1.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71
2. 국내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81

VI. 기관 대응수칙

1. 재난관리체계도 및 절차도	91
2. 환경부 감염병 재난 대응 프로세스	93
3. 환경부 감염병 재난 대응 주요 협업기능	94
4. 감염병 대응 관계기관 주요 임무	95
5. 비상연락망	97

VII. 부 록

1. 서식(공통)	102
2. 기타 참고자료	108

【제·개정 이력】

일자 (승인)	주요 개정 내용	개정사유	담당자	협의기관
'13.5	제정	신규작성	자연자 원과	유관기관
'14.7.	실무매뉴얼 형식 변경 및 내용 구체화, 조직·연락처 현행화	안전행정부 작성지침(14.1)에 따른 보완	생물다 양성과	유관기관
'14.7.	실무매뉴얼 정비	감염병위기관리표준매뉴얼 개정('14.7)에 따른 정비	생물다 양성과	유관기관
'16.10.	실무매뉴얼 정비	감염병위기관리표준매뉴얼 개정('16.7)에 따른 정비	생물다 양성과	유관기관
'18.5	실무매뉴얼 정비	감염병위기관리표준매뉴얼 개정('17.12)에 따른 정비	생물다 양성과	유관기관
'19.7	실무매뉴얼 정비	감염병위기관리표준매뉴얼 개정('19.3)에 따른 정비	생물다 양성과	유관기관
'21.6	실무매뉴얼 정비	감염병위기관리표준매뉴얼 개정('21.4)에 따른 정비	생물다 양성과	유관기관
'23.6	실무매뉴얼 정비	감염병위기관리표준매뉴얼 개정('23.5)에 따른 정비	생물다 양성과	유관기관
'23.12	실무매뉴얼 정비	감염병위기관리표준매뉴얼 개정('23.7)에 따른 정비 및 우리부 대응체계도 자체정비	생물다 양성과	유관기관
'25.4	실무매뉴얼 정비	감염병위기관리표준매뉴얼 개정('25.1)에 따른 정비 및 우리부 대응체계도 자체정비	생물다 양성과	유관기관

I

일반사항

1. 목적
2. 적용 범위
3. 관련 법규
4. 용어 정의

I. 일반사항

1 목적

이 매뉴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공중보건위기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 대한 환경부 및 소속기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생물자원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시·도/시·군·구)의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임.

2 적용 범위

1) 상황범위

가. 이 매뉴얼은 감염병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 적용함

- (1) 재난관리주관기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 (2) 유관기관: 행정안전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조달청,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병무청 등
- (3) 실무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중앙의료원 및 그 밖에 유관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나. 풍수해, 지진재해, 산불 재난 등 다른 유형의 재난이 원인이 되어 감염병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매뉴얼을 적용할 수 있음

2) 기관범위

- 가.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 위기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주관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범정부적인 대응체계 구축
-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야생생물이 원인이 되는 감염병에 한함
- 다. 감염병 위기관리 업무와 관련되는 환경부 및 소속기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생물자원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시·도/시·군·구) 등 야생동물 관리 주체별 역할분담 사항을 정함

3 관련 법규

가. 근거 법령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2)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454호)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

나. 관련 법령

- (1) 「보건의료기본법」 관련 법률
- (2) 「검역법」 관련 법률
- (3) 「의료법」 관련 법률
- (4)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 (5) 그 밖에 감염병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과 관련된 법령

다. 관련 규정, 지침 등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응지침
- (2)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대응지침
- (3)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D) 대응지침
- (4) 인플루엔자 대유행(PI) 대비·대응 계획
- (5)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
*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 (6) 군중모임행사 시 감염병 관리 가이드라인
- (7)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관리평가회의)에서 국가 위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해당 감염병에 대한 지침
- (9)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 대응 메뉴얼(교육부)
- (1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 (11) 사회재난 생활안전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 (12)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메뉴얼(복지부)
- (13)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5)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ASF SOP)
- (16)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AI SOP)
- (17) 야생동물 매개 질병 예방·관리지침
- (18) 기타 각종 감염병 대응 지침 및 메뉴얼

4 용어 정의

구분	내용
국가위기	국가 주권, 영토와 국민의 생명·재산 등 국가의 핵심요소와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
위기관리	국가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대비하고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원을 기획·조직·집행·조정·통제하는 제반 활동과정
비상상황	대규모 피해 발생 우려로 일상적 대응보다 훨씬 강화된 조치나 특별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상황 비상상황은 진행양상과 대처내용에 따라 결과수습형, 완민진행형, 순간중폭형으로 구분
결과수습형	상황 발생 자체가 이미 대규모 피해로 나타난 유형
완민진행형	상황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심각성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유형
순간중폭형	발생 초기에는 저강도 비상상황으로 보였으나, 진행과정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급변하면서 대응력의 한계가 노정되고 실제 시 중대재난으로 귀결되는 유형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유관기관	해당 재난에 대한 정부의 재난관리 활동에 있어 주관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실무기관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기능·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단체
위기경보 수준	① 관심(Blue) : 위기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 수준이 낮아서 국가위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낮은 상태 ② 주의(Yellow) : 위기징후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상태 ③ 경계(Orange) : 위기징후 활동이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 ④ 심각(Red) : 위기징후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서 국가위기 발생이 확실한 상태
재난관리 단계	① 예방 : 위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② 대비 : 위기 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준비·교육·훈련함으로써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위기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 ③ 대응 :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위기 발생 또는 위기의 확대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 ④ 복구 : 위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 개선과 운영체계 보안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활동
감염	감염병의 병원체가 사람의 몸에 침입하여 질병을 유발하는 모든 경우를 통칭함

구분	내용
신종·재출현 감염병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감염병 및 과거에 사라졌다가 다시 발생한 감염병
해외 유입 감염병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해외에서 국내 유입이 가능하거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각종 감염병
인수공통 감염병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감염병 의사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병원체 보유자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의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감염병 의심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나. 「검역법」 제2조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환자격리	타인의 감염을 막기 위해 감염병환자 등을 일정기간 감염병관리기관에 입원시켜 외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
역학조사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
검역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조기 발견의 수단으로 공항,항만, 육로 등에서 사람, 항공기, 선박, 자동차, 화물 등을 검사·격리·방역하는 등의 위생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활동
방역물자	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호장구, 소독약품, 진단시약, 검사장비 등 모든 물품을 통칭함
제한적 전파	전파 양상이 특정 공간(의료기관, 학교, 직장, 집단 시설 등) 위주로 역학적 연관성을 유지하는 경우
지역사회 전파	전파 양상이 특정 공간을 넘어 역학적 연관성이 불분명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전국적 확산	전파 양상이 전국적이며 역학적 연관성을 추적하는 것이 방역 대책에 있어 우선순위가 아닌 경우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II

위기 유형과 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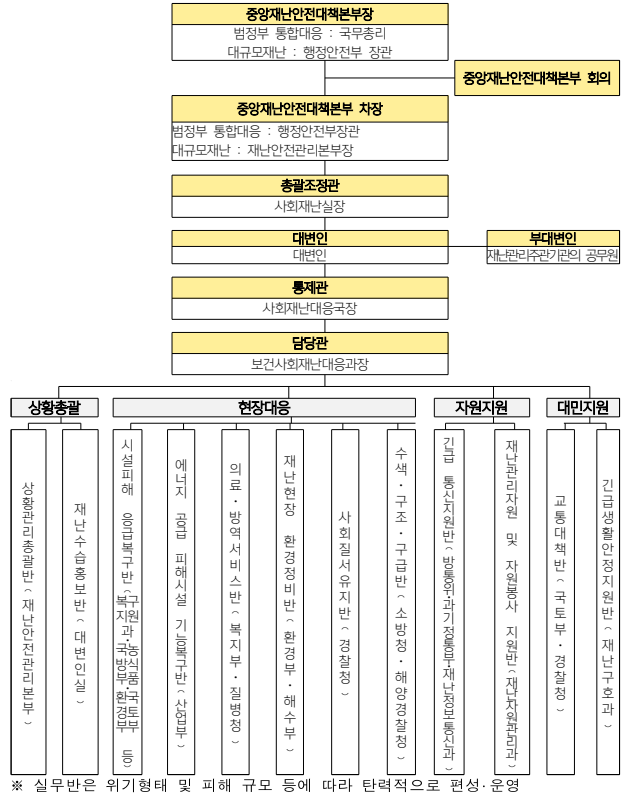
1. 위기 유형
2. 전개 양상
3. 국가 위기관리 체계
4. 위기관리기구의 대응체계
5. 환경부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

구분	임무와 역할
지역방역대책반 (시·도,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방역 대응책 마련·시행 환자 발생 및 사망 감시 역학조사, 진단·검사, 환자 및 접촉자 이송 및 관리 진료병원, 격리병상 및 방역물자 관리 안전취약계층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노인·어린이, 외국인 등)의 격리 시 지원책 마련 감염병 정보 의료기관 공유 및 주민 홍보
중앙수습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대책본부장 등 재난 발생지역의 책임자에 대하여 사태수습에 필요한 기술자문·권고 또는 조언 중앙대책본부장에 대하여 재난수습을 위한 재난현장 상황, 재난 발생의 원인, 행정적·재정적 조치사항 및 진행상황 등에 관한 보고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본부장: 부단체장) ※ 약칭: 통지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 본부를 설치·운영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현장지휘에 협력
지역사고수습본부 (재난관리유관기관의 장이 지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 재난현장의 대응 및 수습 지원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소방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 기관이 행하는 긴급구조 활동의 역할분담 및 지휘통제 담당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 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 기관간의 역할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담당
중앙구조본부 (해양경찰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수난구조 협력기관과 수난 구호 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 조정과 지휘·통제 수난구호활동의 국제적인 협력 등 해역별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광역구조본부 (지방해양경찰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수난구조 협력기관과 수난 구호 민간단체 등이 행 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 조정과 수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 관할 해역의 수난구호활동과 관련하여 타국 구조조정센터(RCC) 간 국제적인 협력 등
지역구조본부 (해양경찰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해역 내 해양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 활동에 관한 직접적인 지휘 책임 및 권한을 가지고 수색구조세력의 효율적 운영 해상에서 수난구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조대 편성 및 운영 해상 응급환자 처치 및 의료기관 긴급이송을 위한 구급대 편성·운영

4 위기관리기구의 대응체계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 구성



2) 실무반별 임무 및 역할

구분	임무 및 역할	담당기관
상황관리 총괄반	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긴급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승인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중앙대책본부장 주재 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화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자) 부처 및 유관기관의 대처계획 및 조치사항파악 보고 차) 재난대응령 대국민 홍보 요청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관리본부
	가) 일일 대처상황 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국회 포함) 다)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라) 태풍·호우·대설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등 재난정보 파악 마) 인명·재산 피해 상황관리 바) 재난지역 수습(대응·복구) 상황 관리 사)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아) TV 방송 모니터링 자)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관리본부 (비상근무자)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및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대통령·국무총리 및 중앙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재난관리책임기관 비상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아)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행정안전부 보건사회 재난대응과

구분	임무 및 역할	담당기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 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다) 재해구조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조정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이재민 구호비용(재난지원금, 재해구호기금)사용 현황 파악 바)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사)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조 업무 아) 부처별 긴급생활안정 지원정책 확인 및 시행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복구지원과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가) 육상 및 해상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나) 육상 및 해상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합장(응동장, 공원, 폐기물 처리시설 등) 설치·운영 지도·확인 라)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 복구현황 파악	환경부, 해수부
긴급 통신 지원반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전력시설 파괴로 인한 통신시설 전력공급대책 마련 지원 다)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라)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복구현황 파악 마) 재난안전통신망(LTE, TRS, PS-LTE) 재난현장 지원	행정안전부 재난통신소 방통위, 과기정통부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가) 공공·사유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 및 자재 등 지원 다)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 응급복구 현황 파악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국방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에너지 공급 피해지원반 기능복구반	가) 국민생활 밀착형 사설가스 전기 유류시설 등 피해상황 파악 나) 시설 긴급복구 상황 파악 다) 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라)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 복구현황 파악 마) 인명구조현장, 이재민 수용시설의 에너지 공급 지원 바) 에너지 단절시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실시	산업부
재난수습 홍보반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TV·라디오 및 CATV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 및 경보 실시사항 등 전파 다)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라) 중앙 및 자치단체 홍보담당관 관리 및 운영 마) 재난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바)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사)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처 유지 및 취재지원) 아)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언론 대응 자) SNS,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차)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카) 현장과 지역대책본부 및 수습본부 재난수습홍보반과의 연락망 구축을 통한 공유·협조체계 구축	행정안전부 대변인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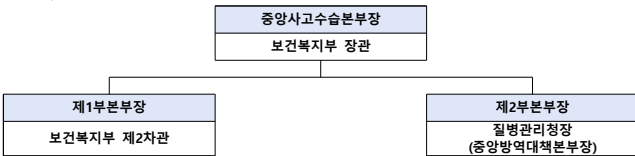
구분	임무 및 역할	담당기관
재난관리자원 및 자원봉사 지원반	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 활용 시스템(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아) 자원봉사활동 가능 분류·배치 자) 민간자원봉사 장비·인력 지원 요청 및 관리 차)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파악 및 관리 카)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및 급식지원 현황 파악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관리과
교통대책반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지역 파악 및 우회도로 개설 지원 라) 육상,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마) 지하철·철도 운행 중단 시 대체수단 투입, 증편·연장 운영 현황 파악	국토부, 경찰청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가) 재난발생지역 응급의료 및 방역 지원 총괄 나) 재해지역 중앙방역비축물자 지원 다) 침수지역 및 이재민 대피소 비상방역체계 가동 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마) 다수 사상자 발생 시 현장 응급의료 지원	복지부 질병청
사회질서 유지반	가)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차량 운행통제 나)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다)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지원 라) 재난발생지역 대피 지원	경찰청
수색, 구조·구급반	가) 재난지역(육상·해상) 수색·구조·구급 상황파악 및 지원 나) 중앙통제단, 지역통제단 운영 및 인명구조현황 파악 등 다) 재난현장 특성 및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화학물질 유출 등으로 접근근란 지역 인명구조·대피계획 확인 및 현황 파악	소방청, 해경청

□ 실무반별 주요 편성기준 및 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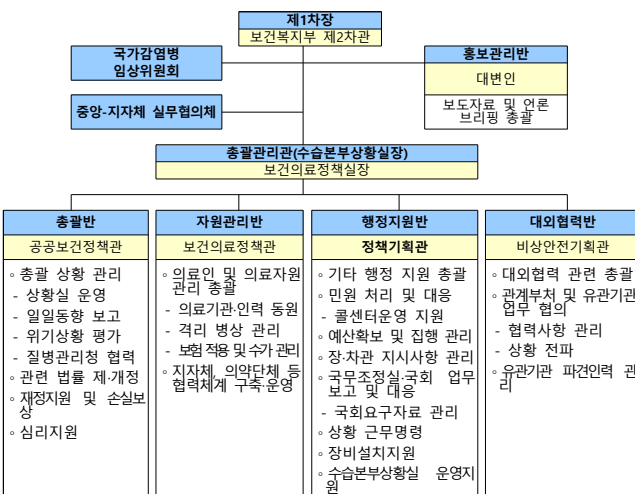
구분	편성기준	임무
상황실장	사회재난대응국장	실무반 상황관리 총괄
상황실 근무반	총 10 명	※ 2층 상황실 근무
상황총괄반 (7명)	반장	보건사회재난대응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의료 재난 대처상황 총괄 보건의료재난대응과 팀장 상주
	상황총괄 (3명)	비상근무자(3명) ※ 2.24(토)까지만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대본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지자체 일일상황보고서 취합 및 정리 관련부처 요청사항 검토 및 지원 중대본 회의운영, 각종회의자료 작성
	부처협업 (3명)	파견근무자(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차장 산하 업무협조 등 연락관 임무 수행 경찰 및 소방 업무협조 등 연락관 임무 수행
현장지원반 (3명)	비상근무자(3명) ※ 2.24(토)까지만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별 애로·건의 사항에 대한 관련부처 협의 지자체별 통계 취합 및 분석·작성 지자체 간부급 활동현황 및 주요 언론 동향(미담 사례 등) 중대본 조치사항 파악 및 관리
대응총괄반	보건사회재난대응과 * 해당과 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수본 협업 및 처리사항 확인 보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련 장차관님 주재 회의 총괄 대통령, 국무총리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대외적인 자료 제출 및 보고서 작성 지자체 및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국내 재난상황 파악, 각종 통계 및 자료분석관리
지역책임관 운영반	사회재난대응총괄과 * 해당과 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대본(제2차장 산하) 구성·운영 총괄·조정 지역책임관(국·과장급) 운영계획 수립·운영
장차관 현장 점검반	농축산해양재난대응과 * 해당과 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차관님 현장 방문 계획 수립·운영 방문 관련기관 협의 및 애로사항 청취 등
기동점검반	국토산업해양재난대응과 환경산업재난대응과 * 해당과 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별 개인병원 휴진 현황 파악 지자체 진료명령, 휴진신고명령 등 행정조치사항 파악 개인병원 업무개시명령서 부착 등 재중작업 현장점검 계획 수립 및 운영 대응 관련 이슈 지자체 기획점검 등 총괄
언론지원반	안전소통담당관 * 해당과 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언론동향 모니터링 및 언론사 등 질의답변 보도자료 검토 및 언론담당부서 회의 준비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브리핑자료 준비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1)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경계·심각)



2)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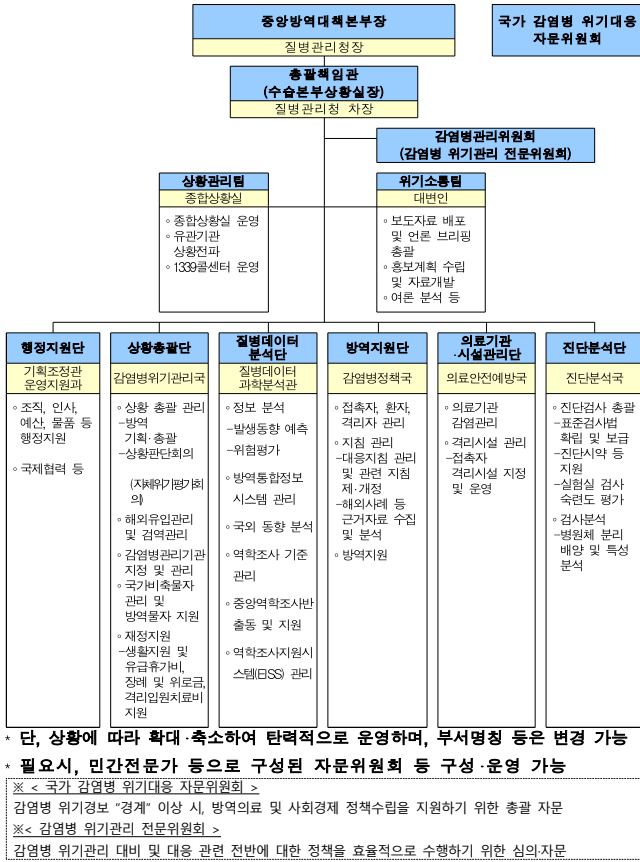
* 단, 상황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부서명칭 등은 변경 가능
* 필요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등 구성·운영 가능
※ <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 >
신종감염병 대응행위 감염병 연구, 임상치료 지침 개발, 치료제 도입 및 투여 지침 마련, 환자데이터 공유, 중환자치료 및 환자전원 지침 마련 등의 임상의료에 관한 사항 논의 및 정책방향 제안

3)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실무반별 임무 및 역할

구분	임무 및 역할	비고
상황총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사고수습 추진상황 총괄·관리 재난 수습상황 전파 및 재난방송 요청 주요인사 상황실 방문시 보고주관 및 보고서 작성 그 밖에 중앙수습본부 운영 총괄 	
자원관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관·인력 등 지원 요청 격리병상 관리 보험, 수가 관리 의료자원 관리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수습 지원 및 요청 	
행정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시 현장대응팀 편성 운용 상황대응 및 처리, 통합지휘소 연락관 역할 등 	현장대응팀 (별도편성)
행정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지원 민원처리 및 대응 예산확보 및 집행관리 장·차관, 국무조정실, 국회 등 업무대응 상황 근무 관리 수습본부 상황실 운영 지원 	
대외협력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방송상황 모니터링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모니터링 재난 수습에 필요한 국민행동요령 홍보 및 전파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KBS 등 재난방송사)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 및 취재지원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언론 브리핑 수습본부 상황근무 명령 수습본부 상황실 운영장비 설치·지원 및 근무자 후생관리 상황실 출입통제 및 수습본부 상황실 운영지원 유관기관 파견근무요청 및 근무상황 관리 그 밖에 수습본부 운영에 필요한 지원 	

다. 중앙방역대책본부

1)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구성



2)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실무반별 임무 및 역할

구분	임무 및 역할	비고
상황관리팀	• 종합상황실 운영 • 유관기관 상황전파 • 1339콜센터 운영	
위기소통팀	•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브리핑 총괄 • 홍보계획 수립 및 자료개발 • 여론 분석 등	
행정지원단	• 조직, 인사, 예산, 물품 등 행정지원 • 국제협력 등	
상황총괄단	• 상황 총괄 관리 • 방역 기획-총괄 - 상황판단회의(자체위평가회의) • 해외유입관리 및 검역관리 •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리 • 국가비축물자 관리 및 방역물자 지원 • 재정지원 -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 장애 및 위로금,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질병데이터 분석단	• 정보 분석 - 발생동향 예측 - 위험평가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관리 • 국외 동향 분석 • 역학조사 기준 관리 • 중앙역학조사반 출동 및 지원 • 역학조사지원시스템(EISS) 관리	
방역지원단	• 접촉자, 환자, 격리자 관리 - 지침 관리 - 대응지침 관리 및 관련 지침 제·개정 - 해외사례 등 근거자료 수집 및 분석 • 방역지원	
의료기관 시설관리단	• 의료기관 감염관리 • 격리시설 관리 -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및 운영	
진단분석단	• 진단검사 총괄 - 표준검사법 확립 및 보급 - 진단시약 등 지원 -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 • 검사분석 - 병원체 분리 배양 및 특성 분석	

3) 관계기관의 주요 임무 및 역할

구분	임무 및 역할	유관기관
대응 활동 가능	재난상황관리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상황관리 지원 •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 (필요시) 대책지원본부 설치-운영	행정안전부
	긴급 생활안정 지원 •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관리 및 지원 • 재난구호활동 관리 및 지원 • 유가족 대책, 응급생계구조 업무 지원 등	행정안전부
	긴급 통신 지원 •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 상황 파악과 지원 •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및 장애 복구 등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설피해 응급복구 • 시설피해 응급복구 지원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관리 지원 • 인명구조 현장, 이재민 수용시설의 에너지 공급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재난관리지원 지원 • 재난관리지원의 동원 및 응원 지원 • 재난관리지원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행정안전부
	교통대책 • 국방부 소관 재난관리지원 지원	국방부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 의료지원팀(DMAT) 운영 • 응급의료 및 장례 등 의료서비스 지원 • 재난현장 질병 관리 등 방역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재난현장 환경정비 • 재난폐기물 수거 처리 등 환경정비 지원 • 환경오염물질 피해상황 및 처리상태 관리	환경부
	지원봉사 지원 및 관리 •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관리 및 지원 •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 지원	행정안전부
	사회질서 유지 • 재난현장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 지역주민 불만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 지역주민 혼란방지를 위한 사회질서 유지 및 안전관리 지원 • 주민대피 지원	경찰청

구분	임무 및 역할	유관기관
수색, 구조·구급지원	• 수색·구조·구급 상황파악 및 지원 •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	소방청
	• (해상) 수색·구조·구급 상황파악 및 지원 • 구조본부 설치-운영	해양경찰청
	• 재난문자 송출 지원 • 재난방송 송출 지원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재난 수습 홍보	• 감염병 재난 관련 정부의 대처상황 등에 대한 홍보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재난피해 근로자의 수습 활동 지원	고용노동부
	• 재난피해 학생의 수습 활동 지원	교육부
피해자 유형	• 재난피해 외국인의 수습 활동 지원	외교부·법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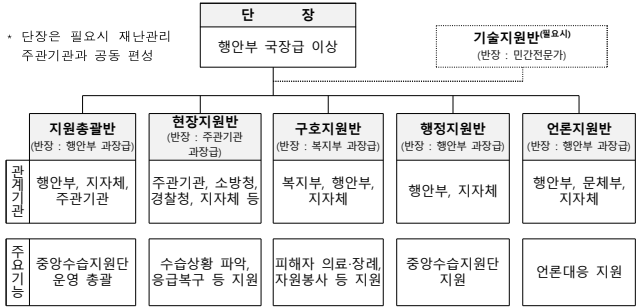
라. 중앙수습지원단

1)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

구분	임무 및 역할	비고
계	34명(잠정)	
단장 (1명)	행정안전부 1명	피해 규모에 따라 실장 또는 국장
현장총괄 지원반 (6명)	행안부 4명, 지자체 2명	지자체 과장급 1명 포함
탐색구조 지원반 (4명)	소방청 2명, 경찰청 2명	필요시 유관기관 파견 (한전, KT 등)
이재민 구급지원반 (5명)	복지부 2명, 행안부 2명, 국토부 1명	필요시 유관기관 파견 (한전, KT 등)
응급복구 지원반 (8명)	행안부 2명, 국토부 1명, 환경부 1명, 산업부 1명, 국방부 1명, 문화재청 1명	필요시 유관기관 파견 (한전, KT 등)
안전점검 지원반 (7명)	국토부 2명, 행안부 2명, 국토관리원 1명, 재난연구원 1명	필요시 유관기관 파견 (한전, KT 등)
언론지원반 (3명)	행안부 1명, 문체부 1명, 지자체 1명	필요시 유관기관 파견 (한전, KT 등)
기술지원반 (필요시)	민간전문가	필요시 유관기관 파견 (한전, KT 등)

- 행정안전부 단장(국장급 이상) 아래 6개 실무반(26+α+β명)으로 편성
 - 재난 초기에는 지원총괄, 현장지원, 구조지원, 언론지원단 등 필수 기능 위주로 표준 편제(안)에 따른 구성을 원칙으로 함
 - ※ 재난유형과 피해상황에 따라 단장·반장 직급 및 실무반은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재난 규모, 인명피해, 재난확산 등을 고려하여 **재난유형별 특성**과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가 구성·운영** 가능
 - * 현장감식·검안반(화재), 폐기물지원반(해양오염), 환경정비반(폐기물 발생), 기반시설 및 주거복구지원반(산불), 응급조치반-안전점검반(지진) 등
 - 단장은 초기 재난수습 및 원활한 업무수진을 위해 **중대본에 편성되지 않는** 자연재난·재난관리정책국장, 사회재난·사회재난정책국장을 우선 편성
 - * 다만, 단장이 별도 임무 수행할 경우 차순위 파견 조치(상황판단회의 시 결정)
 - ※ 실장급 단장일 경우 자연재난·사회재난실장, 사회재난·자연재난실장 우선, 재난유형과 상황에 따라 안전예방정책실장 편성

◀ 수습지원단 표준편제 ▶



□ 실무반별 편성 인원 및 주요 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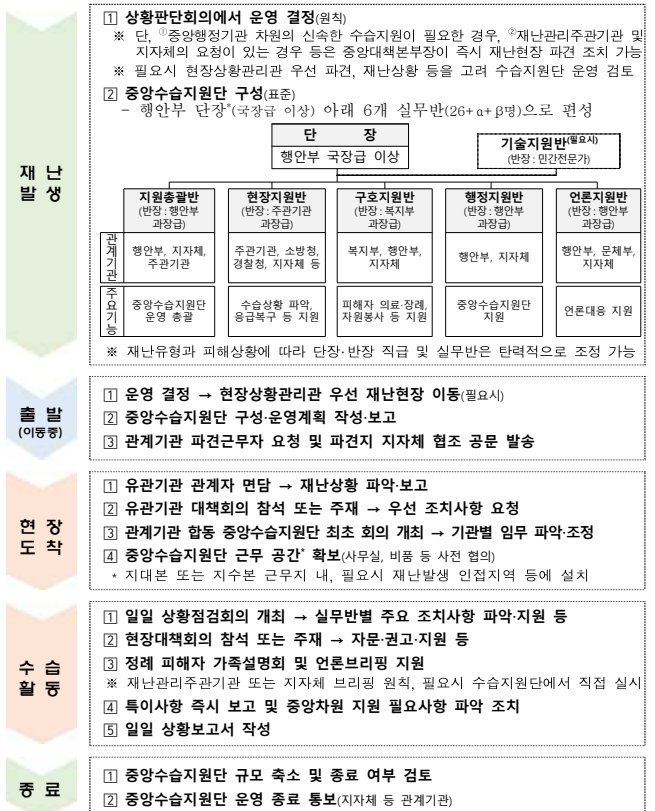
- (단장) 중앙수습지원단 운영 총괄
- (부단장·필요시 편성) 단장 보좌 및 소관분야 피해수습 책임 수행
- (실무반)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규정(행안부 훈령)」에 따라 구성하되, 현장 상황에 따라 단장이 구성 및 편성인력 탄력적 조정

2) 중앙수습지원단의 임무 및 역할

구분	주요 업무	비고
계	26명 + α + β	
단장(1명)	• 중앙수습지원단 운영 총괄	필요시 유관기관 파견
지원총괄반(5명) (반장: 행안부)	• 재난현장 수습지원 총괄 및 상황보고서 작성·보고 • 재난관리책임기관 조치사항 파악 및 업무 조정·지원 • 중앙대책본부장 등 지시사항 이행 조치 • 필요시, 현장점검팀 구성·운영을 통한 피해상황, 지시사항 이행실태 확인·조치	
현장지원반(7+α명) (반장: 주관기관)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수습상황 및 협조사항 파악·지원 • 재난현장 탐색·구조 상황 등 긴급구조통제단 조치사항 파악 • 공공·사유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 전기·가스·통신 등 기반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지원 • 재난현장 인력·장비 및 자재 등 현황 파악·지원 등	유관기관 파견
구조지원반(5+α명) (반장: 복지부)	• 재난피해자 의료·심리 및 장례 지원 •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 • 재해구호물자 및 임시주거시설 등 지원사항 파악·지원 • 재난피해자 애로 및 건의사항 등 파악·지원 • 자원봉사자 활동 현황 파악, 행정적 지원 등	수습지원반·수습관리과
행정지원반(4명) (반장: 행안부)	• 행안부 3명, 지자체 1명(기초)	수습지원반·수습관리과
언론지원반(4명) (반장: 행안부)	• 행안부 2명, 문체부 1명, 지자체 1명(기초)	필요시
기술지원반(β명) (반장: 전문가)	• 재난분야별 기술자문 • 핵심시설 응급복구 지원 등	필요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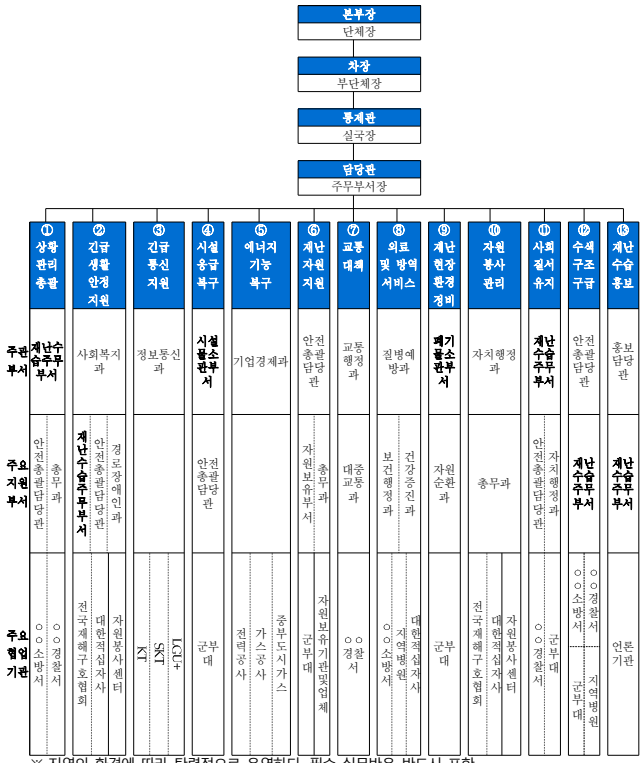
*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규정(행안부 훈령)」에 따라 구성하되, 현장 상황에 따라 단장이 구성 및 편성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

참고 중앙수습지원단 구성·운영 흐름도



마.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1)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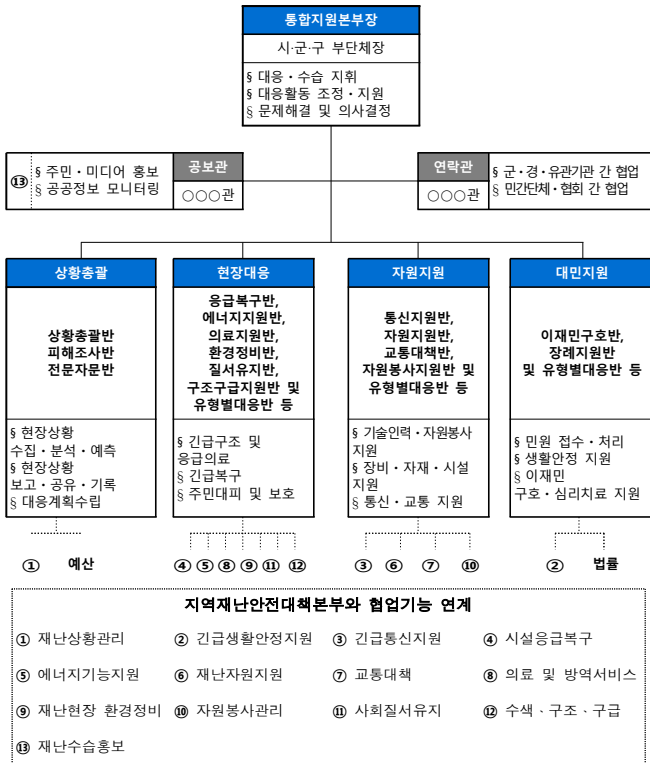


2)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별 주요 임무 및 역할

구 성	주요 임무	
지휘부	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의 업무 총괄
	차장	시·도 부단체장 또는 시·군·구 부단체장이 되며, 본부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통제관	재난관리 총괄 담당 국·과장급이 되며, 본부장 및 차장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비상단계에서 실무반 업무 총괄
	담당관	해당 재난유형의 담당 과장급이 되며, 실무반 업무 총괄·운영
실무반	① 재난상황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황관리지원 업무 총괄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체계획 수립 보고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관리·처리 재난상황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② 긴급생활 안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재민 구호 상황파악 및 지원 유관부처 및 기관 협조 요청 임시주거시설 지정 등
	③ 긴급통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부처 및 시·도 긴급통신지원단 지원 요청 재난현장 긴급통신망(재난안전통신망(PS-LTE)) 구축·운영 지원 기관별 업무·역할에 따른 유무선 비상연락처 전파 등
	④ 시설피해 응급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 도로, 마을기반조성, 광역상수도, 항공, 도시개발 주택 또는 주거를 결한 상가 방조제, 저수지, 배수장 등 수리시설 농경지, 농림시설, 축사, 비닐하우스 어항시설, 어선, 어업 무선국시설, 등대시설, 항만시설 염전,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서식·양식시설, 수산물입식 국·공립, 사립 학교시설 산사태, 산지계류, 사방댐 및 임도, 휴양림, 수목원 자목 및 표고바섯 재배사, 산림작물 정보통신 시설 등 응급복구
	⑤ 에너지공급 피해 시설 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긴급지원 등 재난대응 상황실 운영 임시 재난대책본부 에너지 공급지원 이재민 임시수용시설 긴급에너지 지원 등
	⑥ 재난관리 자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 피해지역 부족 자재·장비·인력 지원체계 가동 자원 응원 요청 및 조정 자원 응원관리 자원실적 정리, 보고서 작성
	⑦ 교통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통제 및 도로 긴급복구 실시 대체교통수단 확보 특별교통대책 수립·시행, 수송수단·장비·인력 지원 교통정보(상황) 수집 및 제공, 노선 및 운행 조정
	⑧ 의료 및 방역 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현장 응급의료 지원팀 지원 요청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체계 가동 준비 임시주거시설 주변 방역활동 실시 사상자 및 부상자 현황 파악·관리 입·퇴원 환자 병역 파악·관리
	⑨ 재난현장 환경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현장 폐기를 수거·처리계획 시행 재난폐기물 발생량 등 파악 및 지원체계 구축
	⑩ 자원봉사 지원및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봉사활동 상황 취합 및 보고 자원봉사 인력 필요 물품 및 기자재 확보 자원봉사자 개인 및 단체 언론활동 관리 자원봉사자 활동 모니터링 실시 자원봉사자 활동지역 배분
	⑪ 사회질서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우려지역 순찰강화 및 출입통제 피해지역 범의예방 및 치안유지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재난지역 긴급차량 이동 최우선 지원 재해발생 우려지역 등 사전 교통통제 예상지역 조사
	⑫ 수색·구조·구급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명피해 발생대비 응급의료기관의 준비상황 및 비상연락망 점검 고립지역, 침수지역, 산사태, 화학·방사능 등으로 접근 곤란 예상지역 현황파악 및 인명구조·대피 계획수립

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구성



2) 주요 임무

구분	실무반	주요임무	소관 부서장	지대본 연계	
지휘부	본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지원본부 운영 총괄·조정 통합지원본부 요원 총원 및 복무 현장상황 의사결정 등 	부단체장 (필요시단체장)	① 재난상황관리	
	공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주인·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대국민 행동요령 및 주의사항 등 홍보 지상파 방송, 지역방송사에 자막방송 요청 재난방송 및 보도자료 작성·배포 언론브리핑 및 취재지원 	공보담당과장		
	연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기관 대표자들의 의견 조율 통합지원본부장의 연락창구 역할 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 및 협회, 전문가 간 협업 	총무과장		
상황총괄	상황총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응급/기록 현장대응계획수립 현장보고서 작성 예산 확보 및 집행 (필요시) 재난사태 선포 건의 현장상황수집·보고(지대본 상황관리반 등)·전파 민원접수·처리 등 현장민원실 운영 	안전총괄과장	① 재난상황관리	
	피해조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현황 조사 및 기록 			
	전문자문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상황 분석 및 예측 자문 현장대응계획수립 자문 	민간전문가		
	응급복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사유시설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 복구추진 소요 인력 장비 지원 요청 및 협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건설과장 또는 건축과장		④ 시설응급복구
	에너지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스·전기공급 시설 피해상황 파악 구조구급공급, 이재민 수용시설의 에너지 지원 	에너지과장		⑤ 에너지기능지원
현장대응	의료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응급의료소에 필요한 인력·물적 지원 지원 병원별 근무자 배치, 부상자 현황관리 의료비 지급보증 및 의료비 지원 피해자 심리지원 지대본 생활안전지원반에 상황보고 	과거 보건소 근무경험이 있는 과장	⑧ 의료 및 방역서비스	
	환경정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쓰레기 처리 생활권 주변 폐기물 수거 재난폐기물 처리에 따른 인력, 장비지원 요청 및 협의 	환경과장	⑨ 재난현장 환경정비	
	질서유지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혼잡 완화 조치 주민대피 안내 및 대피지원 응급환자 및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동선 확보 피해지역의 출입통제 및 질서유지, 범죄예방 활동 교통통제 및 현장통제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재난지역 긴급차량 이동 최우선 지원 	감사담당관 또는 새마을과장	⑪ 사회질서유지	
	구조구급 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발생지역 수색·구조·구급 상황파악 및 지원 환자 발생 시 응급치료 및 긴급수송 지원 	총무과장	⑫ 수색·구조·구급	
	유 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화대 동원, 산물진화 	산림과장	⑬ 산물처리	
					①

구분	실무반	주요업무	소관 부서장	지대본 연계	
구분	형별 대응반	진화 건물 안전진단	■ 화재 및 붕괴 등 피해건물 안전진단, 긴급조치	건축과장	재난상황관리
		제설 지원	■ 구조장비, 제설장비 지원(예: 리프트 붕괴 사고)	도시개발과장	④ 시설응급복구 ⑥ 재난자원지원
		오염 처리	■ 현장 오염 잔재물 처리(예: 불산 누출 사고)	환경과장	⑨ 재난현장 환경정비
		농·축산 지원	■ 축산피해농가 조사(예: 불산 누출 사고) ■ 농작물 정밀조사(예: 불산 누출 사고)	농축산과장	① 재난상황관리
구분	자원 지원	통신지원반	■ 재난현장 긴급통신체계 가동 ■ 통신시설 파손에 따른 통신두절 상황관리 ■ 통신 피해시설 긴급복구 추진 ■ 긴급통신장비 보급	정보통신과장	③ 긴급통신지원
		자원지원반	■ 자원지원 요청사항 처리 ■ 현장 자원상태 기록 관리 ■ 재난현장의 자원수요 예측 ■ 피해지역 응급복구 인력, 장비, 자재 동원 ■ 예지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정비, 자재 동원 ■ 의료 및 방역물자, 장비 동원	자치행정과장 또는 기획감사실장	⑤ 재난자원지원
		교통대책반	■ 피해현장 주변지역 교통상황 파악 관리 ■ 피해현장 주변 차량 우회대책 마련 ■ 대중교통 운행 중단시 대체수단 투입 ■ 통행 해소시기 예측 관리		⑦ 교통대책
		자원봉사 지원반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지원 ■ 피해상황 전달 등 지원단과 상황 공유 ■ 자원봉사 활동 시 소요되는 장비, 인력, 자재, 수송수단 등 지원 ■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현황 파악	교통행정과장	⑩ 자원봉사관리
구분	대민 지원	이재민 구호반	■ 이재민 발생 현황파악 및 보고 ■ 임시주거시설 제공 ■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지원 ■ 임시주거시설 근무자 배치 ■ 피해자 생계지원 등 ■ 재난지원금 지원 ■ 법률 상담 및 자문 지원 ■ 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	사회복지과장	② 긴급생활 안정지원
		장례지원반	■ 사망자 인적사항 파악 ■ 장례식장 전달인력 배치 ■ 유가족 1:1전담 지원 업무 ■ (필요시) 분향소 설치 운영 ■ 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		
		법률지원반	■ 소송 및 민간법률자문	민간법률전문가	
구분	유관 기관	■ 군, 경, 소방, 유관기관 동원 ■ 전기·가스·통신 등 시설복구 ■ 기타 유관기관의 소관시설·업무 수행	유관기관 파견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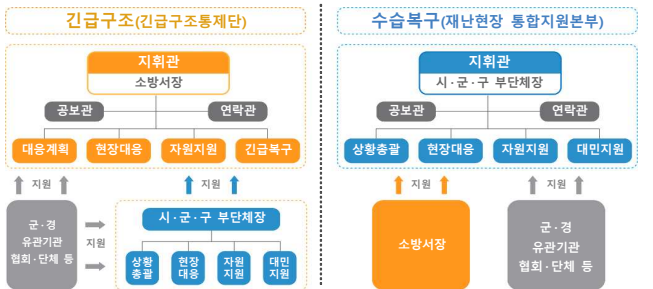
참고1 재난현장의 긴급구조 및 수습복구

□ 현장의 재난 대응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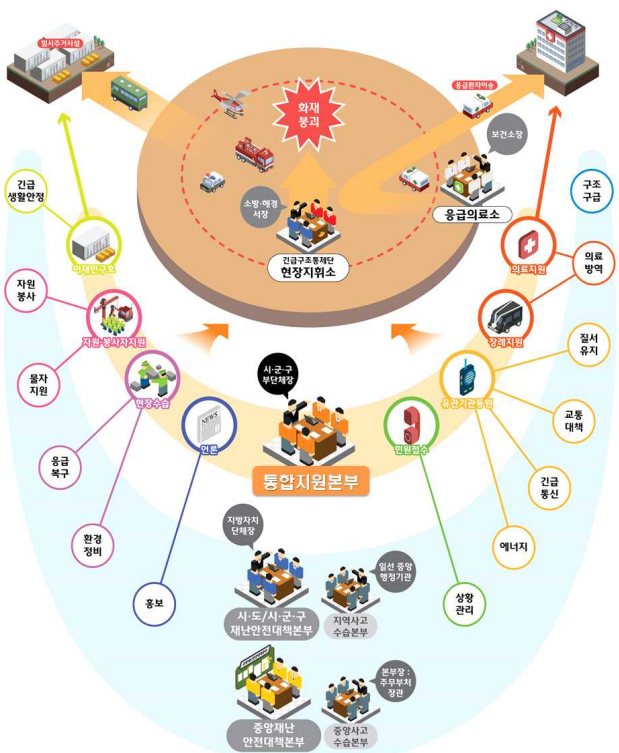
- 지역 내 재난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비상기구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통합지원본부**(통지원), **긴급구조통제단/구조본부** 구성·운영
- **지역대책본부**는 지자체장 주관으로 **재난 수습을 총괄**하며, **통합지원본부** 및 **긴급구조통제단** 등은 실제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등 수습 활동을 지원 및 통제

구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긴급구조통제단/구조본부
근거	· 「재난안전법」 제16조	· 「재난안전법」 제16조	· 「재난안전법」 제49~52조 · 「수상구조법」 제5조
지휘권자	· 지자체장	· 시군구 부단체장	· 소방청장(중앙), 소방본부장(시도), 소방서장(시군구) · 해양청장(중앙), 지방해양청장(시도), 해양서장(시군구)
설치장소	· 지자체 청사	· 재난 현장	· 재난 현장
기능	· 관할구역 내 재난 수습 총괄·조정	·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등 통합 지원	·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등 긴급구조활동 지휘·통제

□ 재난현장 긴급구조 및 수습복구 표준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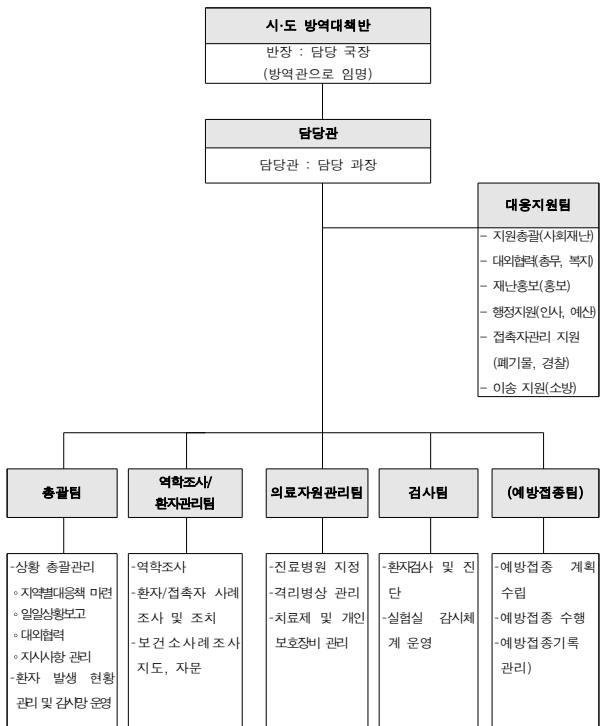


참고2 재난현장 위기관리기구 및 13개 협업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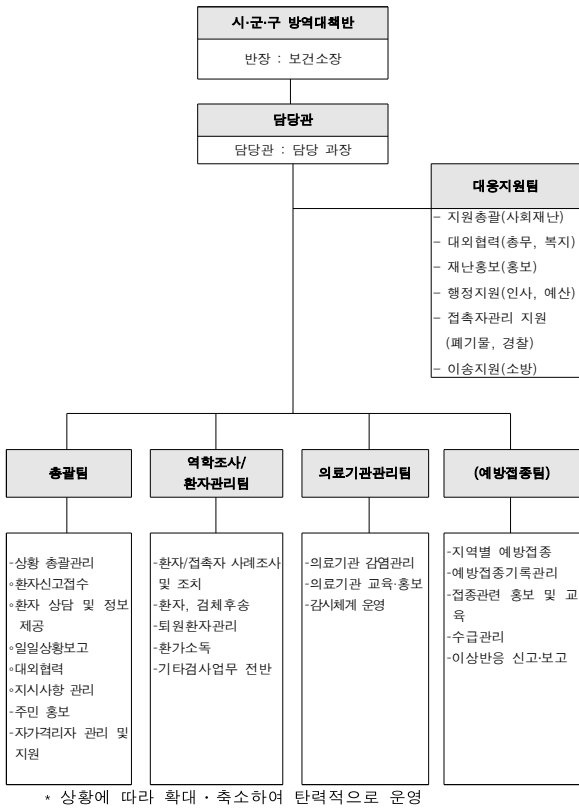
사. 지역방역대책반

1) 시·도 방역대책반



* 상황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2) 시·군·구 방역대책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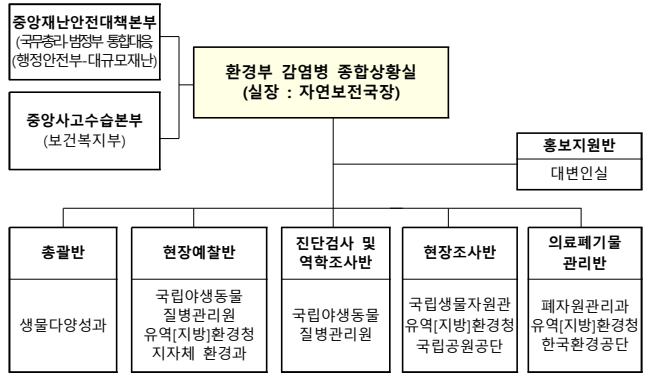


* 상황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5 환경부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

가. 환경부 대응체계

□ 환경부 감염병 종합상황실



□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팀

담당 부서	주요기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 질병연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염의심 야생동물 질병 예찰 및 확인 야생동물 질병감염 원인규명 및 추적

□ 현장조사팀

담당부서	주요기능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 운영팀, 유역[지방]환경청,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병매개 야생동물 서식현황 조사 질병매개 야생동물 생태적 특성 정보제공

나. 부서별 임무

구분	임무	담당기관
① 총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대책반 운영 및 상황보고 총괄 감염병 예방 및 관리활동 총괄 유관기관 협조체계 총괄 	생물다양성과
② 현장예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황보고 매개 야생동물 예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환경과
③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황보고 역학조사 총괄 진단검사체계 총괄 표준진단검사 수행 검사결과 분석·취합 병원체 분리 배양 및 특성 분석 진단시약 등 지원 실험실 정도 평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④ 현장조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황보고 매개야생동물 서식지 파악 및 관리 	국립생물자원관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⑤ 의료폐기물 관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폐기물 관리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폐자원관리과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⑥ 홍보반	대외협력 및 홍보, 언론 대응	대변인실

* 단, 상황에 따라 확대 축소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필요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등 구성 운영 가능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기본 방향

1. 목표
2. 방침
3.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
4. 위기징후 감시
5. 위기 평가
6. 위기정보와 경보 발령
7. 비상근무체계

Ⅲ. 위기관리 기본방향

1. 목표

- 가. 감염병 재난의 예방·대비 태세를 사전에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 초기 응급대책 및 긴급 지원체계의 신속한 가동을 통해 피해 최소화
- 나. 감염병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비 태세를 사전에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위기상황 조기 종식 유도
- 다. 감염병 재난 발생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 라. 위기경보 단계별로 언론과 위기 관리 커뮤니케이션을 이행하여 대국민 정보공유 및 소통강화 도모

2. 방침

가. 감염병 재난 발생에 대한 대비 태세 확립

- (1) 평소 국내외 감염병 발생 동향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 및 공방항만을 통한 입국자 검역 강화
- (2) 격리병상과 방역물자(예방·치료제, 개인보호구 등)를 확보하고, 방역요원 부족에 대비한 대체인력 동원 계획 마련

나. 감염병 재난 발생 시 효과적 대응 및 추가 확산 차단

- (1) 재난 발생 초기에 상황 파악, 보고진파 체계를 명확히 하고, 기관 간 지휘체계 일원화
- (2)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방역기관(질병관리청, 보건소) 및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재난관리 역량 총동원

다. 신속·정확·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 불안 해소

- (1) 신속·정확한 상황 파악 및 투명한 정보 공개로 국민 신뢰 확보
- (2) 유언비어 등으로 인한 국민 동요 및 심리적 공황 방지

3.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

가. 대응개념

- (1) 목표 :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확산 조기 차단
- (2) 대응방향
 - 신종·재출현 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야생동물 질병 검사 및 감시체계 강화
 - 주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 및 야생동물 포획 시스템 가동

나. 대응지침

- (1) 감염병을 매개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 질병 검사 강화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진단기관 등의 야생동물 질병 검사 강화
- (2) 주관기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과의 비상연락 체계 유지를 통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
 - 감염병 발생동향에 대한 실시간 정보 교류 및 비상연락체계 운영
 - 위기 상황 단계별 협력시스템 구축
 - 야생동물 질병검사 및 서식지 출입통제 인력 확보 등 범정부적 지원 협의

다. 판단·고려 요소

-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발령에 따라 신속한 대응 여부
- (2) 소속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3) 감염병 증상, 확산 추세, 유관기관 대응 태세
- (4) 신종·재출현 감염병 유행 시 매개야생동물에 대한 역학 조사, 수의사의 조건 및 진단 등 고려
 - 유행 지역, 규모, 야생동물의 주요 증상, 수의사의 임상조건, 역학조사서, 진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행 질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황별 대응조치
 - 국외 인접국가의 감염병 유행 규모 및 대응 등 해외 발생동향 자료 및 국제기구(WHO)의 발표 자료 등 분석
 - 해외 유사 대응사례 및 주관기관과의 협조범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야생동물 관리방안 마련

4. 위기징후 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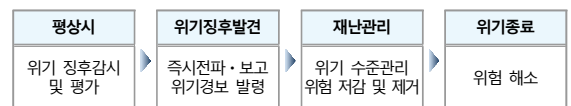
가. 위기징후 목록

위기형태 (2)	위기징후 (6개)	감시수단 (4개)	감시방법	위기경보	조치 (대비·대응)
1. 해외신종 감염병의 국내유입 및 확산 *주로 해외에서 발생하며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적이 없는 감염병 *원인미상의 감염병	1.1. 주변국 발생 또는 유행 확산 *인접국가 또는 포획가 활발한 국가 등 1.2. 겨울 철새 이동 유입 *예: 동물인플루엔자 1.3. 새로운 감염병 매개체 발생 또는 유행 확산 *모기 전파, 동물 등	·사건기반 감시 *국외 감염병 관련 뉴스 등 ·지표기반 감시 *전수, 표본, 실험실 감시	·평시 사건 및 지표 기반 감시 지속하며 필요시 감시 강화 *중동호흡기 증후군(MERS) 등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 ·신고 접수 *종합상황실, 콜센터(1339)	상황판단 회의(자체 위기평가 회의) 결과에 따라 관심-심각 발령 *감염병의 중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위기경보 발령 및 관련부처지자체 등에 상황 전파 ·국제기구(OIE, FAO, WHO) 및 해외 공관 등을 통해 해외 발생 동향 수집 전파, 발생 시 현황 등 정보 공유
2. 자연재해 또는 대규모 유통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오염된 물이나 음식이 유통될 수 있는 감염병 *이외에도 위생 악화로 인한 감염병	2.1. 빈발시기 도래 *태풍, 호우, 가뭄, 요인 등 2.2. 재-지역에서 의심환자 발생 또는 유행 확산 *오염된 물이나 음식 또는 위생 악화로 인한 감염병 2.3. 기상이변(폭염, 한파 등)으로 인하여 의심환자 발생 또는 유행 확산 *오염된 물이나 음식 또는 위생 악화로 인한 감염병	·사건기반 감시 *경보/특보 발령, 기상 정보, 정부·국외 뉴스 등 ·지표기반 감시 *전수, 표본, 실험실 감시	·평시 사건 및 지표 기반 감시 지속하며 빈발 시기 도래시 감시 강화, 필요시 대책반 운영 *19년 폭염 대응에 관련 감염병(장염, 비브리오, 오파혈충) 등 발생 정보 환류 지속	상황판단 회의(자체 위기평가 회의) 결과에 따라 관심-심각 발령 *감염병의 중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해위 공관 등을 통해 해외 발생 동향 수집 전파, 발생 시 현황 등 정보 공유 ·긴급 상황 발생시 중앙역학 조사반이 현장지원 하고, 종합상황실 중심으로 24시간 대응

나. 위기징후 감시체계와 운용

- (1) 근거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20조(징후감시체계 운용)

(2) 감시체계 및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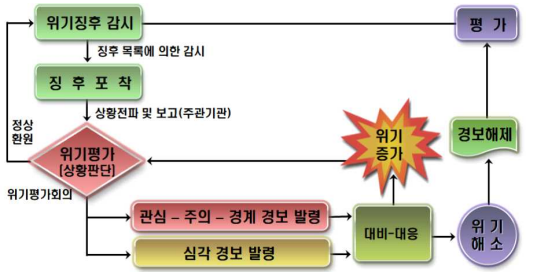
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등”)는 위기 징후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위기형태에 따른 감염병 재난의 위기징후를 위기징후 목록별 감시수단을 통해 상시 감시

나) 보건복지부등은 감염병 재난의 위기징후 감시 평가결과를 매주 행정안전부를 거쳐 국가안보실·대통령비서실에 제출

*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에서 위기징후 감시 평가결과 등을 등록하고, 위기 경보 발령·조정 시에는 수시 등록

다) 보건복지부등은 감염병 재난 관련 기관·부서의 위기징후 감시 및 평가를 종합 관리

위기징후 감시와 평가, 경보 과정



* 심각 경보 발령 전·후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비서실과 사전 협의

위기징후 감시제 운용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등 (재난관리주관기관)	유관기관 실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후목록작성 지침 운용 - 목록 종합 관리 ○ 징후감시활동 방향 제시 - 중점감시 대상, 감시방법 등 ○ 징후감시결과 보고, 전파 - 재난 상황관리 등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징후 목록 작성 및 관리 - 새로운 징후목록 발굴, 징후목록 최신성 유지 ○ 위기징후 감시 - 특이징후 집중 감시 ○ 주기적 위기징후 분석 - 평가 결과 제출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에서 위기징후 감시평가 결과 등을 입력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징후 감시 ○ 위기징후에 따라 소관 분야 위기 관리

5 위기 평가

가. 근거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21조(위기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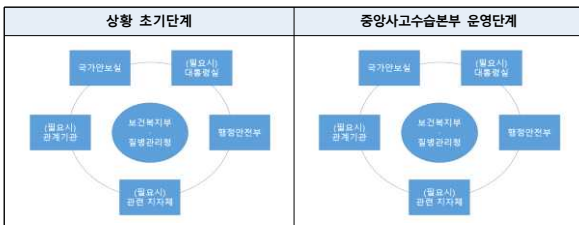
나. 위기 평가 회의 개요

- 목적: 수집된 위기징후 정보를 종합하여 위기수준을 평가하고, 위기경보 발령·변경 및 해제, 비상근무 체계 가동 여부, 사고 수습 대응책 등 논의
- 시기: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재난 위기징후 포착 또는 위기발생 예방 시, 자체위기평가회의(상황판단회의)를 개최·운영
 - * 위기경보 발령 동안 주기적(90일)으로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상황을 재평가하고 위기경보 단계의 유지 또는 조정 여부를 결정
- 참석자: 질병관리청 청장(의장), 질병관리청 차장, 감염병위기관리국장 등 질병관리청 관련 국장, 위기관리총괄과장 등 감염병별 관련 부서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및 관련 전문가
 - * 필요시 민간전문가 및 관련 단체 대표자(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등) 추가 소집 등 참석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 * 의장 회의 참석 불가 시, 의장이 유선으로 지명하거나 미리 지명한 자가 회의 주제
 - * 다만,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하향 시, 관계부처(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장급 이상 등) 및 관련 민간전문가 5인 이상의해감법, 응급, 예방, 중환자, 소아 등), 사회 및 경제 등 관련 전문가 필수 참석

(4)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 방법

- (소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의참석 대상자에 유·무선 통화 또는 영상 등으로 회의 소집
- (장소) 질병관리청 상황판단실 또는 신속한 개최 가능 장소
- (합동회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평가회의 개최(대면회의가 어려울 경우 영상회의로 개최)
 - ① 재난관리주관기관(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청)에서 재난의 규모 및 대응 단계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위기평가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대통령실(국가안보실·대통령비서실)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위기평가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경우
 - * 단, 재난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미지정된 기관도 회의 참여 가능

<관계기관 합동 위기평가 영상회의 구성>



* 영상회의는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또는 신속한 개최 가능 장소에서 개최

- (평가기준) 위기평가는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 기간, 파급 효과, 국내외 여론, 정부의 대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기평가 실시

6 위기경보와 경보 발령

가. 위기경보 수준

종류	위기 유형		주요 대응 활동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발생	
관심 (Blue)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시 질병관리청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대응 역량 정비 필요시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주의 (Yellow)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운영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경계 (Orange)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지속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행안부) 범정부 지원본부 운영 검토 필요시 총리주재 범정부 회의 개최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방역 및 감시 강화 등
심각 (Red)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부처 총력 대응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다만, 감염병의 특성, 유행상황, 대응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기 유형에도 불구하고 하향되는 체계에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에서 판단하는 경우 하향 조정 가능

나. 위기 정보 절차

(1) 정보 원칙

-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은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 결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
 - * 자체위기평가회의는 '5. 위기평가'의 '나. 위기 평가 회의 개요' 내용 참고
- 감염병 재난은 감염병의 종류, 유입 및 발생 상황, 대응 역량 등에 따라 전개 속도나 파급효과 등이 상이하므로, 상황에 따라 상기 기준을 바탕으로 위기정보 단계를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 (예시) 두창 감염병의 경우 재출현 감염병이나, 감염병의 파급력, 공중보건위기 가능성 등 고려할 때, 1건이라도 발생 시 '심각' 단계 발령 가능
- 또한 관심, 주의, 경계, 심각한 4단계를 반드시 순차적으로 발령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위기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가능
 - * 단, 경계 단계이상 상황 시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
- 감염병별 개별 지침에서 동 매뉴얼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에 한하여 위기정보 발령 기준 변경 가능
- 상황이 급박할 경우 유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우선 결정하고 사후보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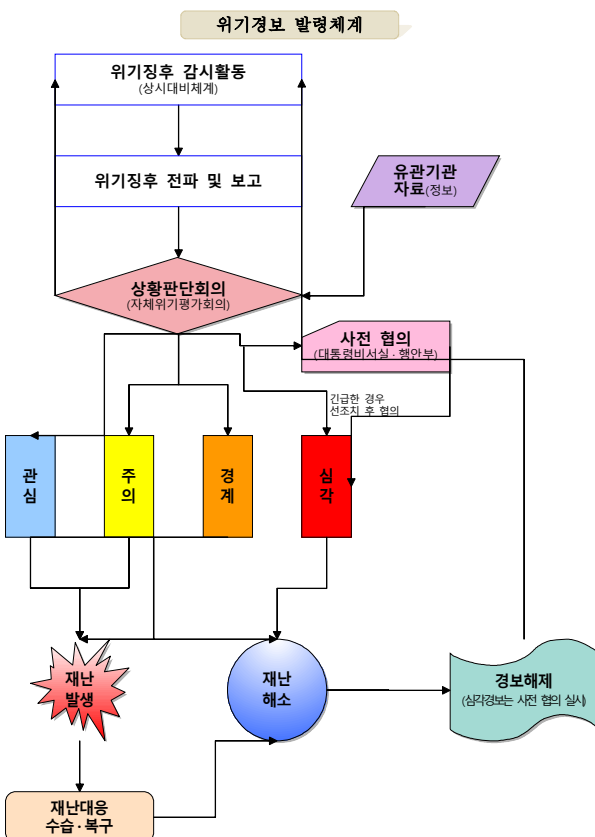
(2) 정보 발령 절차

- 위기발생 또는 예상,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정보 발령 순으로 진행
-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 결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

-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위기정보 발령 시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 대통령비서실(국정상황실,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안전부, 관련부처·기관 등에 신속히 전파

- * 관심·주의·경계 단계에서 질병관리청장이 발령·전파, 심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령·전파하되, 필요 시 두 기관이 협의하여 한 곳에서 대표로 실시할 수 있다.
- 범정부 차원의 평가와 조치가 요구되는 "심각" 수준의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 대통령비서실 및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다만, 위급한 상황일 경우 선 조치 후 지체없이 협의에 착수하여야 함
- 위기 상황에 대한 언론 브리핑 등 대외 홍보활동은 공식적인 창구를 지정·운영하여 혼선이 없도록 함
-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위기단계의 임무와 역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해야 한다.
 - ①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소관 재난과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되는 경우

다. 위기정보 발령체계(흐름도)



라. 위기정보 단계별 대응체계

위기정보 단계	대응 체계		
	중앙	지자체	
① 관심	감염병별 대책반 (질병관리청)	지역 방역대책반 (발생 지자체)	
② 주의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	지역 방역대책반 (전국 시도, 발생시도의 모든 시군구)	
③ 경계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 * 중수본 제2본부	총리주재 범정부 회의 중앙사고수습본부 (보건복지부) 범정부 지원본부 (행정안전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발생 지자체) 지역 방역대책반 (전국 지자체)
④ 심각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 * 중수본 제2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무총리) 중앙사고수습본부 (보건복지부) 범정부 지원본부 (행정안전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전국 지자체) 지역 방역대책반 (전국 지자체)

- * 심각 단계에서 필요시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하도록 요청
- *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은 위기단계 임무와 역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에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을 권고할 수 있음

가. 환경부 비상단계별 근무편성 기준

구분	임무	근무인원
종합상황실 (자연보전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염병 재난 총괄 	
총괄반 (생물다양성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황반장을 보좌하고, 상황반장 사고 시 직무 대행, 재난 관련 업무 전반의 총괄 비상대책반 운영 및 상황보고 총괄 감염병 예방 및 관리활동 총괄 유관기관 협조체계 총괄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물다양성과장 1명 생물다양성과 사무관 1명, 주무관 1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사 1명 국립생물자원관 지원인력 1명
현장예찰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유역(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황보고 매개 야생동물 예찰(시료 채집, 포획, 폐사체 수거) 상시 예찰 및 발생지역 특별예찰 	(11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 대응팀 10명 유역(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100명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황보고 진단검사체계 총괄 표준진단검사 수행 검사결과 분석·취합 병원체 분리 배양 및 특성 분석 진단시약 등 지원 실험실 정도 평가 역학조사 총괄 	(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 연구팀 10명
현장조사반 (국립생물자원관 기후·환경생물 연구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황보고 질병매개 야생동물 서식지 파악 및 분포 현황 정밀조사, 이동 현황 파악 질병매개 야생동물 생태적 특성 정보제공 	(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생물자원관 기후·환경 생물연구과 및 국가철새 연구센터운영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포·이동 등 2개팀 9명 국립생태원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동물 생태특성 조사 국립공원공단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동물 생태특성 조사

IV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1. 관심
2. 주의
3. 경계
4. 심각

IV.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1 관심

가. 상황

□ 개요
○ 해외에서 신종·재출현 감염병(SARS 등) 발생 (국내 원인불명 감염환자 발생)
□ 세부내용
○ 일시 및 장소 : 00년 00월 00일 00개 국가
○ 발생현황 : 신종·재출현 감염병 00지역에서 00명(두) 발생
□ 기타
○ 언론 보도 : 00월 00일 00시 KBS, MBC, SBS, YTN 보도

나. 조치사항

1) 조치목록

조치사항	세부내용	비고
(가) 위기경보 접수	(가-1) 위기경보 접수 (가-2) 위기징후 확인	○ 생물다양성과
(나) 보고 및 전파	(나-1) 보고 (나-2) 유관기관 전파	○ 생물다양성과
(다) 조치	(다-1) 매개 야생동물 국내 유입 여부 조사 (다-2) 야생동물 예찰업무 강화 (다-3) 매개 야생동물 서식지에서 사전 예방 조치 실시 (다-4) 야생동물 폐사체 발생 시 검사	○ 생물다양성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생물자원관, 지자체, 민간단체

2) 조치내용

(가) 위기경보 접수

(가-1) 위기경보 접수

- 주관기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정보 입수 및 상황 파악

(가-2) 위기징후 확인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생물자원관,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 및 부서 확인

(나) 보고 및 전파

(나-1) 보고

- 보고자 : 생물다양성과장
- 내용 : 신고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감염병 발생내용 및 가능한 대책, 본부 차원의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상황보고서를 작성 보고(서식 1 참조)
- 보고대상 : 장·차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등

(나-2) 유관기관 전파

- 전파자 : 생물다양성과장
- 내용 : 신고 접수내용을 바탕으로 감염병 발생내용 및 가능한 대책, 본부 차원의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상황보고서를 작성 전파(서식 1 참조)
- 전파대상 : 소속기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생물자원관, 유역(지방)환경청], 산하기관(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지자체, 야생동물 구조센터, 민간단체 등

(다) 조치

- (다-1) 매개 야생동물 국내 유입 여부 조사
- 담당 : 생물다양성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생물자원관
 - 조치내용
 - 지자체 및 유관기관 비상 연락체계 점검
 - 감염병 대응지침 준비·현행화 및 유관기관 공유
 - 매개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 대상 추가 등 수입 통제 검토
 - 매개 야생동물의 국내 유입 현황 파악
 - 매개 야생동물의 분포 및 이동 경로 파악
 - 조치결과 공유 : 매개 야생동물 국내 유입 확인 시 주관기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 정보 공유
- (다-2) 야생동물 예찰업무 강화
- 담당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유역(지방)환경청, 민간단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 조치내용
 - 야생동물 폐사체 발생 상황 모니터링
 - 실험실 진단검사 체계 점검
 - 소독약품, 방역복, 시료채취 도구 등 비품물자 확보실태, 시설, 장비 등 점검 확인
 - 야생동물 질병 예찰 계획 수립 및 질병 검사
 - 조치결과 공유 : 대량 폐사 또는 감염병 검사 결과 양성 시 주관 기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 정보 공유
- (다-3) 매개 야생동물 서식지 사전 예방 조치

- 담당 : 지자체(시·도·시·군)
- 조치내용
 - 질병 의심 야생동물의 신고체계 점검
 - 소독약품, 방역복, 시료채취 도구 등 비품물자 확보실태, 시설, 장비 등 점검 확인

정후 감시활동(기상관측 및 예보 모니터링)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자료를 바탕으로 감염병 발생 동향 모니터링 및 질병매개 야생동물 특이사항 확인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자료, 국내·외 언론보도 등을 통해 감염병 발생 상황 수시 확인
- 질병매개 야생동물 등 감염 여부 등 특이사항 수시 확인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부서	임무와 역할
생물다양성과	○ 상황 파악 및 대응방안 강구 ○ 소속기관 및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 상황 전파 ○ 매개 야생동물 수입 통제 검토
국립야생동물 질병관리원	○ 야생동물 질병 예찰계획 수립 ○ 질병 예찰 결과 전파
국립생물자원관	○ 매개 야생동물의 국내유입여부 및 현황 조사 ○ 매개 야생동물의 분포 및 이동경로 조사
유역(지방)환경청	○ 야생동물 폐사체 발생상황 모니터링 ○ 소독약품, 방역복, 시료 채취 물품 확보 실태 점검

2 주의

가. 상황

<p>□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 (국내에서 신종감염병 발생 및 지역별 재출현 감염병 발생)
<p>□ 세부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및 장소 : 00년 00월 00일 00지역 ○ 발생현황 : 해외에서 발생한 신종 감염병에 감염된 야생동물을 00 지역에서 00개체 확인
<p>□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보도 : 00월 00일 00시 KBS, MBC, SBS, YTN 보도

나. 조치사항

1) 조치목록

조치사항	세부내용	비고
(가) 위기경보접수	(가-1) 위기경보 접수 (가-2) 위기정후 확인	○ 생물다양성과
(나) 보고 및 전파	(나-1) 보고 (나-2) 유관기관 전파	○ 생물다양성과
(다) 조치	(다-1) 매개 야생동물 시료채취 및 감염병 검사 (다-2) 매개 야생동물을 통한 전파 경로 파악 (다-3) 매개 야생동물 서식지 감시 강화	○ 생물다양성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생물자원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민간단체

2) 조치내용

(가) 위기경보 접수

- (가-1) 위기경보 접수
- 주관기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정보 입수 및 상황 파악
- (가-2) 위기정후 확인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생물자원관,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 및 부서 확인

(나) 보고 및 전파

- (나-1) 보고
- 보고자 : 생물다양성과장
 - 내용 : 신고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감염병 발생내용 및 가능한 대책, 본부 차원의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상황보고서를 작성 보고(서식 1 참고)
 - 보고대상 : 장·차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등
- (나-2) 유관기관 전파
- 전파자 : 생물다양성과장
 - 내용 : 신고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감염병 발생내용 및 가능한 대책, 본부 차원의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상황보고서를 작성 전파(서식 1 참고)
 - 전파대상 : 소속기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생물자원관, 유역(지방)환경청), 산하기관(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지자체, 야생동물구조센터, 민간단체 등

(다) 조치

(다-1) 매개 야생동물 시료 채취 및 감염병 검사

- 담당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유역(지방)환경청, 민간단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 조치내용
 - 실험실 진단검사 및 야생동물 폐사체 발생상황 모니터링 강화
 - 매개 야생동물 서식지의 폐사체, 분변 등 검사 시료 채취 및 감염병 검사
 -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 합동 조사 및 정밀 검사 지원
 - 감염병 발생 지역 인근에서 감수성 높은 야생동물 구조 자체
- 조치결과 공유 : 대량 폐사 또는 감염병 검사 결과 양성 시 주관 기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 정보 공유

(다-2) 매개 야생동물을 통한 전파 경로 파악

- 담당 : 생물다양성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생물자원관
- 조치내용
 - 매개 야생동물의 개체수·분포현황 및 이동경로 등 파악
 - 필요 시 매개 야생동물 집단 서식지 출입 통제, 포획, 수출·입 허가 금지 조치 및 지자체 통보
- 조치결과 공유 : 매개 야생동물 분포 및 이동 현황 주관기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 정보 공유

3 경계

가. 상황

<p>□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신종 재출현 감염병의 국내 유입 후 타 지역으로 전파 (국내 신종감염병의 타 지역 전파 및 대규모 재출현 감염병의 타 지역 전파) <p>□ 세부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및 장소 : 00년 00월 00일 00지역 ○ 발생현황 : 00지역에서 발생한 해외 신종 재출현 야생동물 매개 감염병이 △△지역 등 00개소로 확산되어 00명(개체) 감염 <p>□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 보도 : 00월 00일 00시 KBS, MBC, SBS, YTN 보도
--

나. 조치사항

1) 조치목록

조치사항	세부내용	비고
(가) 위기경보접수	(가-1) 위기경보 접수 (가-2) 위기징후 확인	○ 생물다양성과
(나) 보고 및 전파	(나-1) 보고 (나-2) 유관기관 전파	○ 생물다양성과
(다) 조치	(다-1) 매개 야생동물 모니터링 및 감염병 검사 강화 (다-2) 매개 야생동물 서식지 출입 통제 (다-3) 국민의 불안심리 해소를 위한 대국민 홍보	○ 생물다양성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생물자원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민간단체

(다-3) 매개 야생동물 서식지 감시 강화

- 담당 : 지자체(시·도·시·군)
- 조치내용
 - 발생지역 인근의 매개 야생동물 서식지 출입 지양 권고, 야생동물 접촉 시 유의사항 안내 등 서식지 관리 및 감시 강화
 - 질병 의심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으로의 의뢰·이송 체계 강화
 - 매개 야생동물 포획 및 수출·입 통제 조치

재난상황 모니터링 및 전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자료를 바탕으로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의심정황이 있는 질병매개 야생동물 특이사항 확인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자료, 국내·외 언론보도 등을 통해 감염병 발생상황 수시 확인
- 의심정황이 있는 질병매개 등 감염여부 등 특이사항 수시 확인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부서	임무와 역할
생물다양성과	○ 상황 파악 및 대응방안 강구 ○ 소속기관 및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 상황 전파 ○ 매개 야생동물 포획 및 수출입 통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야생동물 폐사체 발생 상황 모니터링 강화 ○ 매개 야생동물 시료 채취 및 감염병 검사 ○ 관계기관 합동조사 및 정밀검사
국립생물자원관	○ 매개 야생동물의 분포 및 이동경로 조사 ○ 관계기관 합동조사 및 정밀검사
유역(지방)환경청	○ 야생동물 폐사체 발생 상황 모니터링 ○ 매개 야생동물 검사시료 채취 및 검사 의뢰

2) 조치내용

(가) 위기경보 접수

(가-1) 위기경보 접수

- 주관기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정보 입수 및 상황 파악

(가-2) 위기징후 확인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생물자원관,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 및 부서 확인

(나) 보고 및 전파

(나-1) 보고

- 보고자 : 생물다양성과장
- 내용 : 신고 접수내용을 바탕으로 00로 감염병 발생내용 및 가능한 대책, 본부 차원의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상황보고서를 작성 보고(서식 1 참조)
- 보고대상 : 장·차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등

(나-2) 유관기관 전파

- 전파자 : 생물다양성과장
- 내용 : 신고 접수내용을 바탕으로 감염병 발생내용 및 가능한 대책, 본부 차원의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상황보고서를 작성 전파(서식 1 참조)
- 전파대상 : 소속기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생물자원관, 유역(지방)환경청], 산하기관(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지자체, 야생동물구조센터, 민간단체 등

(다) 조치

- (다-1) 매개 야생동물 모니터링, 감염병 검사 인프라 강화
- 담당 : 생물다양성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생물자원관, 유역(지방)환경청, 민간단체(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 조치내용
 - 매개 야생동물 검사 시료 채취 지역·수량 확대 및 검사 강화
 - 실험실 진단검사·감시 체계 강화
 - 필요시 집중진단기관 지정 및 관리
 - 야생동물 전문가 현장 조사 및 매개 야생동물 서식·이동현황 모니터링
 - 매개 야생동물 이동 예상 지역 분석 및 통제지역 선정
 - 시·도/시·군·구의 지역별 질병 발생 동향 감시 강화
 -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 등 유관기관 상호협력체계 강화
 - 필요 시 주관기관 역학조사반 합동 정밀 조사 및 역학조사
 - 감염병에 감염된 야생동물 확인 시 상황실 운영 등 신속대응 체계 구축
 - 감염병 발생 우려지역 인근에서 감수성 높은 야생동물 구조 자체
 - 조치결과 공유 : 폐사체 발견, 감염병 검사결과, 매개동물 이동 상황을 주관기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 정보 공유
- (다-2) 매개 야생동물 서식지 출입 통제
- 담당 : 지자체(시·도/시·군)
 - 조치내용
 - 야생동물 서식지 통제지역(환경부 지정) 출입 통제 및 순찰 강화
 - 매개 야생동물 포획물 처분 등 오염원 제거
 - 이동 통제 초소 운영 및 소독
 -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한 현장 통제·정리 및 교육 지속
 - * (예) 발생지역 출입 제한 또는 일시 폐쇄, 오염물건 폐기, 장소 소독 등

(다-3) 국민의 불안심리 해소를 위한 대국민 홍보

- 담당 : 생물다양성과, 대변인실
- 조치내용
 - 대국민 홍보 기초자료 취합 및 관계기관 제공
 - 언론보도, 언론변화 모니터링 실시

재난상황 정보수집 및 전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자료를 바탕으로 감염병 재난상황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질병매개 야생동물 확인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자료, 국내·외 언론보도 등을 통해 감염병 발생 및 진행 상황 지속적으로 확인
- 질병매개 등 감염여부 등 특이사항 지속적으로 확인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부서	임무와 역할
생물다양성과	○ 상황 파악 및 대응방안 강구 ○ 소속기관 및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 상황 전파 ○ 매개 야생동물 서식지 통제 지역 선정 ○ 상황실 운영 검토 등 신속 대응체계 구축 ○ 홍보자료 취합, 관계기관 제공
국립야생동물 질병관리원	○ 매개 야생동물 시료 채취 및 감염병 검사 강화 ○ 관계기관 합동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국립생물자원관	○ 전문가 현장 조사 및 서식·이동현황 모니터링 ○ 매개 야생동물 이동 예상 지역 분석 ○ 관계기관 합동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유역(지방)환경청	○ 야생동물 폐사체 발생 상황 모니터링 강화 ○ 매개 야생동물 검사 시료채취 및 검사 의뢰

4 심각

가. 상황

<p>□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신종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국내 신종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p>□ 세부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및 장소 : 00년 00월 00일 00지역 ○ 발생현황 : 00지역에서 발생한 해외 신종 재출현 야생동물 매개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00명(개체) 감염 <p>□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보도 : 00월 00일 00시 KBS, MBC, SBS, YTN 보도

나. 조치사항

1) 조치목록

조치사항	세 부 내 용	비 고
(가) 위기경보접수	(가-1) 위기경보 접수 (가-2) 위기징후 확인	○ 생물다양성과
(나) 보고 및 전파	(나-1) 보고 (나-2) 유관기관 전파	○ 생물다양성과
(다) 조 치	(다-1)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다-2) 매개 야생동물 모니터링 및 감염병 검사 강화 (다-3) 매개 야생동물 서식지 통제 강화 (다-4) 국민의 불안심리 해소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생 물 다 양 성 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생물자원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민간단체

2) 조치내용

(가) 위기경보 접수

- (가-1) 위기경보 접수
- 주관기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정보 입수 및 상황 파악
- (가-2) 위기징후 확인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생물자원관,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 및 부서 확인

(나) 보고 및 전파

- (나-1) 보고
- 보고자 : 생물다양성과장
 - 내용 : 신고 접수내용을 바탕으로 감염병 발생내용 및 가능한 대책, 본부 차원의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상황보고서를 작성 보고(서식 1 참고)
 - 보고대상 : 장·차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등
- (나-2) 유관기관 전파
- 전파자 : 생물다양성과장
 - 내용 : 신고 접수내용을 바탕으로 감염병 발생내용 및 가능한 대책, 본부 차원의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상황보고서를 작성 전파(서식 1 참고)
 - 전파대상 : 소속기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생물자원관, 유역(지방)환경청], 산하기관(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지자체, 야생동물구조센터, 민간단체 등

(다) 조치

(다-1)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 담당 : 생물다양성과
- 조치내용
 - 감염병 대응 상황반 구성·운영
 - 위기관리 관련 관계부처 협의회 정례회의 참석
 -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방역 보완대책 마련 등 범정부적 감염병 방역 대응 지원

(다-2) 매개 야생동물 모니터링 및 감염병 검사 강화

- 담당 : 생물다양성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생물자원관, 유역(지방)환경청, 민간단체(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등)
- 조치내용
 - 살처분, 소각, 매몰, 소독, 이동통제 등 조치사항 시달
 - 매개 야생동물 검사 시료 채취 지역·수량 확대 및 검사 강화
 - 야생동물 전문가 현장 조사 및 매개 야생동물 이동특성 분석
 - 매개 야생동물 이동 예상 지역 분석 및 통제지역 선정
 - 주관기관 역학조사반 합동 정밀 조사 및 역학조사
 - 감염병 발생 우려지역 인근에서 감수성 높은 야생동물 구조 자체
- 조치결과 공유 : 폐사체 발견, 감염병 검사결과, 매개동물 이동 상황을 주관기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 정보 공유

(다-3) 매개 야생동물 서식지 통제 강화

- 담당 : 지자체(시·도·시·군)
- 조치내용
 - 야생동물 서식지 통제지역(환경부 지정) 출입통제 및 순찰 강화

-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및 서식지의 보존기관 출입통제
- 매개 야생동물 포획물 처분 등 오염원 제거
- 이동 통제 초소 운영 및 소독

(다-4) 국민의 불안심리 해소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담당 : 생물다양성과, 대변인실
- 조치내용
 - 야생동물 집단 서식지 출입통제 대한 국민 협조 홍보
 - 대국민 홍보 기초자료 취합 및 관계기관 제공

재난상황 정보수집 및 전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자료를 바탕으로 감염병 재난상황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질병매개 야생동물 확인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자료, 국내·외 언론보도 등을 통해 감염병 발생 및 진행 상황 지속적으로 확인
- 질병매개 등 감염여부 등 특이사항 지속적으로 확인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부서	임무와 역할
생물다양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대응 상황반 운영 ○ 소속기관 및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 상황 전파 ○ 매개 야생동물 서식지 통제 지역 선정 ○ 야생동물 방역 대책 마련 ○ 살처분·소독 등 조치사항 시달 ○ 대국민 홍보 강화
국립야생동물 질병관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개 야생동물 시료 채취 및 감염병 검사 강화 ○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국립생물자원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현장조사 및 이동 특성 분석 ○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유역(지방)환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동물 폐사체 발생상황 모니터링 강화 ○ 매개 야생동물 검사 시료 채취 및 검사 의뢰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V

재난상황별 조치내용 및 절차

1.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2. 국내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v. 재난상황별 조치내용 및 절차

1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가. 상황

<p><input type="checkbox"/> 개요</p> <p>00년 00월 00일 우리나라와 인접한 00나라 00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감염병이 국내 유입,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00개 국가에서 00으로 추정되는 질환이 00명(00두) 발생 확인)</p>
<p><input type="checkbox"/> 세부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종 감염병(사스 등) 발생 정보 입수 : 00월 00일 00시 00국가 00지역에서 00명의 환자 및 가족 발생 ○ 발생 현황 (지역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00지역 : 생략 ○ 조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입국자에 대한 검역활동, 해외발생 모니터링 - 환경부 : 야생동물의 이동경로 등 모니터링 및 포획 지원 ○ 기타 : 언론보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보도 내용 : 00월 00일 00시 KBS, MBC, SBS, YTN 등

나. 조치사항 및 절차

1) 조치목록

조치사항	세부내용	비고
(가) 위기상황접수 및 보고/전파	(가-1) 위기상황 접수 (가-2) 보고/전파 (가-3) 자체대책회의 개최	○ 생물다양성과
(나) 초동조치	(나-1) 현장조치팀 현장 출동 (나-2) 방역대책 지원방안 수립 (나-3) 사고대응정보 제공	○ 생물다양성과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 ○ 국립생물자원관/ 기후·환경생물연구과
(다) 대응조치	(다-1) 대응 상황반 설치 검토 (다-2) 매개 야생동물 검사시료 채취 및 감염병 검사 (다-3) 매개 야생동물 서식 및 이동현황 모니터링 (다-4) 매개 야생동물 이동 예상지역 분석 및 통제지역 선정 (다-5) 주권기관 역학조사반 합동 정밀 조사 및 역학조사 (다-6) 야생동물 서식지 출입 통제 (다-7) 대국민 홍보	○ 생물다양성과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 ○ 국립생물자원관/ 기후·환경생물연구과
(라) 후속조치	(라-1) 사고수습 처리상황 종합 보고 (라-2) 사고후 영향조사	○ 생물다양성과

- 접수 시 확인사항
 - 접수사항 : 접수시간, 신고자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접수자
 - 내용 : 위기발생일자/시간, 발생장소, 위기유형, 감염병 특성 등
 - ※ 접수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접수

(가-2) 보고·전파

- 상황보고
 - 보고 및 전파자 : 생물다양성과장
 - 내용 : 신고 접수내용을 바탕으로 사고발생 내용 및 가능한 대책, 본부차원의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상황보고서를 작성 보고·전파(서식1 참고)
 - 보고대상 : 장·차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등
 - 전파대상 : 소속기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생물자원관, 유역(지방)환경청], 산하기관(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지자체, 야생동물구조센터, 민간단체 등
 - ※ 상황확인 동안 긴급사항의 경우는 선 구두 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

(가-3) 자체대책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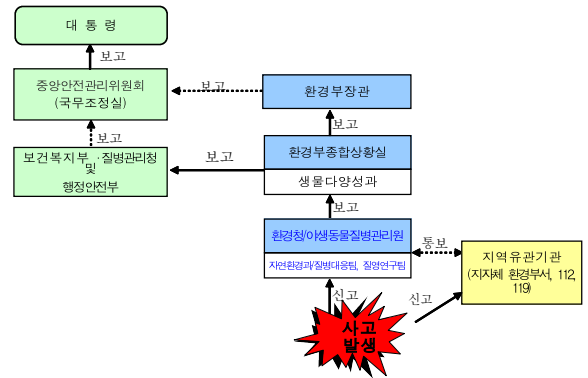
- 주관 :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 참석인원 : 자체위기관리회의 구성원
- 회의내용
 - 위기상황 평가 및 우선 조치사항 검토
 - 유관기관 협조 요청사항

2) 조치내용

(가)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가-1) 위기상황 접수

○ 체계도



○ 접수처

- 주관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환경청 자연환경과
- 환경부 : 044-201-7247 (FAX : 044-201-7261)
- 환경청 : VII. 3의 관련기관 연락처 참고
- 야간 : 환경부·환경청 당직실
- 환경부 : 044-201-6500 (FAX : 044-201-9280)
- 환경청 : VII. 3의 관련기관 연락처 참고
- ※ 당직실 근무자는 접수 즉시 감염병 담당자에게 연락

(나) 초동조치

(나-1) 현장조치팀 현장 출동

- 출동지시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국립생물자원관장, 환경청장
- 출동인원/장비

구 분	검사시료채취반	야생동물모니터링반
출동인원	5명 내외	3명 내외
출동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보호장비 : 가슴장화, 방역복, 1회용 비닐장화, 방역마스크, 1회용 리텍스 장갑, 사진기, 망원경 ○ Eppendorf tube 또는 코니컬튜브 ○ 나무젓가락, 위생비닐봉지 ○ 폴리에스터 소재 면봉 ○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 9×9 종이 랙 ○ GPS ○ 분류표기용 라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보호장비 : 가슴장화, 방역복, 1회용 비닐장화, 방역마스크, 1회용 리텍스 장갑 ○ 관찰장비 : 쌍안경, 망원경, 삼각대, 사진기, 포충망 등 ○ GPS ○ 기록장 및 필기도구 ○ 조사지역 상세지도

- ※ 현장지휘소에 위치하여 보호 장비 착용 후 진입
- 피해현황 등 현장 확인 및 초동조치 지원

(나-2) 방역대책 지원방안 수립

- 주관 : 생물다양성과
- 야생동물 감염병 검사 강화 계획 수립
- 매개 야생동물 집단 서식지 통제 방안 수립

(나-3) 사고대응정보 제공

- 주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생물자원관
- 매개 야생동물 생태 특성 및 위치정보 제공
- 야생동물 감염병 검사 결과 제공

(다) 대응조치

(다-1) 대응 상황반 설치 검토

- 상황반장 : 자연보전국장
- 상황종합 보고 : 생물다양성과장
- 구성 : 상황분석·정보관리반, 유관기관협력반, 홍보지원반
- 임무
 - 사고 초동조치 및 상황의 종합관리
 - 현장지휘팀 대응활동 지원
 - 주관기관 대책본부 및 유관기관과 연락체계 유지·지원 협의
 - 대국민 언론홍보 및 정보제공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관 파견

(다-2) 매개 야생동물 검사시료 채취 및 감염병 검사

- 담당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유역(지방)환경청
- 조치내용
 - 검사시료 채취 일정, 지역, 수량 등 세부계획 수립
 - 검사시료 운송, 검사수행, 검사결과 보고 체계 확인
 - 검사시료 채취 인력 투입 및 폐사체, 분변 등 시료 채취
 - 검사시료에 대한 신속한 감염병 검사 및 결과 보고

(다-6) 야생동물 서식지 출입 통제

- 담당 : 지자체(시·도/시·군)
- 조치내용
 - 야생동물 서식지 출입 통제
 -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및 서식지의 보존기관 출입통제
 - 매개 야생동물 포획물 처분 등 오염원 제거
 - 이동 통제 초소 운영 및 소독

(다-7) 대국민 홍보

- 담당 : 생물다양성과, 대변인실
- 조치내용
 - 야생동물 집단 서식지 출입통제에 대한 국민 협조 홍보
 - 대국민 홍보 기초자료 취합 및 관계기관 제공

(다-3) 매개 야생동물 서식 및 이동 현황 모니터링

- 담당 : 국립생물자원관
- 조치내용
 - 야생동물 전문가 현장 조사 및 현황 파악
 - 매개 야생동물 중 및 개체수 파악·수시보고
 - 매개 야생동물 포획이 가능한 경우 추적 계획 수립 및 위치추적장치 부착
 - 매개 야생동물 이동 현황 파악·수시보고

(다-4) 매개 야생동물 이동 예상지역 분석 및 통제지역 선정

- 담당 : 생물다양성과, 국립생물자원관
- 조치내용
 - 매개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따른 이동특성 분석
 - 매개 야생동물의 서식지 선호도 분석을 통한 이동 예상지역 도출
 - 매개 야생동물 서식 현황, 이동특성, 사람의 접근 가능성 등을 고려한 통제 지역 선정 및 통보

(다-5) 주관기관 역학조사반 합동 정밀조사 및 역학조사

- 담당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생물자원관
- 조치내용
 - 주관기관 역학조사반 현장 정밀조사 및 역학조사 지원
 - 매개 야생동물의 생태 특성 정보 및 감염병 검사 결과 제공
 - 주관기관 역학조사위원회의 참석

3) 체크리스트

조치절차	조치내용	수행여부		비고
		YES	NO	
위기상황접수 및 보고/전파	위기상황 접수, 보고/전파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초동조치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지시, 소독 및 방역 물품 확보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소속기관 질병매개 야생동물 예찰 지시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대응조치	본부 감염병 상황반 설치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소속기관 감염병 대책반 설치	○		국립야생동물 질병관리원, 국립생물자원관, 지방환경청
	감염병 일일예찰 및 수시예찰 등 감시현황 파악, 소독 및 방역 물품 확보	○		국립야생동물 질병관리원
	질병매개 야생동물 서식지 및 이동특성, 서식현황 조사	○		국립생물자원관
	감염병 일일예찰 및 수시예찰 등	○		지방환경청
후속조치	위기 상황 지속 주시	○		환경부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부서	임무와 역할
생물다양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염병 대응 상황반 운영 소속기관 및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 상황 전파 매개 야생동물 서식지 통제 지역 선정 서식지의 보존기관 통제 검토 야생동물 방역 대책 마련 살처분·소독 등 조치사항 시달 대국민 홍보 강화
국립야생동물 질병관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개 야생동물 시료 채취 및 감염병 검사 강화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국립생물자원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조사 및 이동특성분석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유역(지방)환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생동물 폐사체 발생상황 모니터링 강화 매개 야생동물 검사 시료 채취 및 검사 의뢰

2 국내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 개요

00년 00월 00일 00지역에서 발생한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
 (00개 국가에서 00으로 추정되는 질환이 00명(두) 발생)
 (00개 지역(시·도/시·군)에서 00으로 추정되는 질환이 00명(두) 발생)

□ 세부 내용

- 신종·재출현 감염병(사스 등) 발생 정보 입수 : 00월 00일 00시 00 지역에서 00명(두) 발생
 - 발생 경위 등(의심환자발생보고서 불임 2 참조)
- 발생 현황 (지역별 등)
 - 국내 00지역 : 생략
- 조치 사항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입국자에 대한 검역활동, 해외발생 모니터링
 - 환경부 : 야생동물의 이동경로 등 모니터링 및 포획 지원
- 기타 : 언론보도 등
 - 언론보도 내용 : 00월 00일 00시 KBS, MBC, SBS, YTN 등

나. 조치사항 및 절차

1) 조치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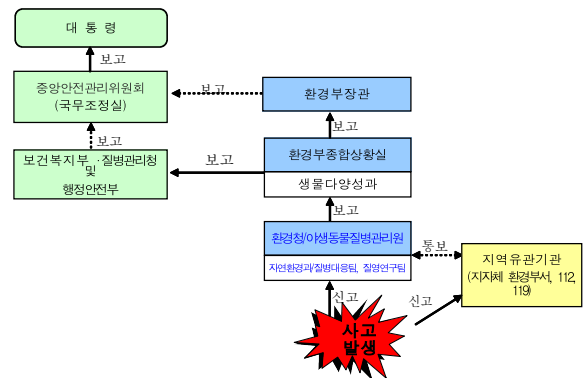
조치사항	세부내용	비고
(가) 위기상황접수 및 보고/전파	(가-1) 위기상황 접수 (가-2) 보고/전파 (가-3) 자체대책회의 개최	○ 생물다양성과
(나) 초동조치	(나-1) 현장조치팀 현장 출동 (나-2) 방역대책 지원방안 수립 (나-3) 사고대응정보 제공	○ 생물다양성과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질병대응팀 ○ 국립생물자원관/기후·환경생물연구과
(다) 대응조치	(다-1) 대응 상황반 설치 검토 (다-2) 매개 야생동물 검사시료 채취 및 감염병 검사 (다-3) 매개 야생동물 서식지 이동현황 모니터링 (다-4) 매개 야생동물 이동 예상지역 분석 및 통제지역 선정 (다-5) 주관기관 역학조사반 합동 정밀 조사 및 역학조사 (다-6) 야생동물 서식지 출입 통제 (다-7) 대국민 홍보	○ 생물다양성과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질병대응팀 ○ 국립생물자원관/기후·환경생물연구과 ○ 유역(지방)환경청/자연환경과 ○ 국립생태원 ○ 국립공원공단
(라) 후속조치	(라-1) 사고수습 처리상황 종합 보고 (라-2) 사고후 영향조사	○ 생물다양성과

2) 조치내용

(가)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가-1) 위기상황 접수

○ 체계도



○ 접수처

- 주간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환경청 자연환경과
- 환경부 : 044-201-7247 (FAX : 044-201-7261)
- 환경청 : VII. 3의 관련기관 연락처 참고
- 야간 : 환경부·환경청 당직실
- 환경부 : 044-201-6500 (FAX : 044-201-9280)
- 환경청 : VII. 3의 관련기관 연락처 참고
- ※ 당직실 근무자는 접수 즉시 감염병 담당자에게 연락

○ 접수 시 확인사항

- 접수사항 : 접수시간, 신고자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접수자
- 내용 : 위기발생일자/시간, 발생장소, 위기유형, 감염병 특성 등
- ※ 접수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접수

(가-2) 보고·전파

○ 상황보고

- 보고 및 전파자 : 생물다양성과장
- 내용 : 신고 접수내용을 바탕으로 사고발생 내용 및 가능한 대책, 본부차원의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상황보고서를 작성 보고·전파(서식1 참고)
- 보고대상 : 장·차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등
- 전파대상 : 소속기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생물자원관, 유역(지방)환경청], 산하기관(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지자체, 야생동물구조센터, 민간단체 등
- ※ 상황확인 동안 긴급사항의 경우는 선 구두 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

(가-3) 자체대책회의 개최

- 주관 :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 참석인원 : 자체위기평가회의 구성원
- 회의내용
 - 위기상황 평가 및 우선조치사항 검토
 - 유관기관 협조 요청사항

(나-3) 사고대응정보 제공

- 주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생물자원관
- 매개 야생동물 생태 특성 및 위치정보 제공
- 야생동물 감염병 검사 결과 제공

(다) 대응조치

(다-1) 대응 상황반 설치 검토

- 상황반장 : 자연보전국장
- 상황종합 보고 : 생물다양성과장
- 구성 : 상황분석·정보관리반, 유관기관협력반, 홍보지원반
- 임무
 - 사고 초동조치 및 상황의 종합관리
 - 현장지휘팀 대응활동 지원
 - 주관기관 대책본부 및 유관기관과 연락체계 유지·지원 협의
 - 대국민 언론홍보 및 정보제공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관 파견

(다-2) 매개 야생동물 검사시료 채취 및 감염병 검사

- 담당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유역(지방)환경청
- 조치내용
 - 검사시료 채취 일정, 지역, 수량 등 세부계획 수립
 - 검사시료 운송, 검사수행, 검사결과 보고 체계 확인
 - 검사시료 채취 인력 투입 및 폐사체, 분변 등 시료 채취
 - 검사시료에 대한 신속한 감염병 검사 및 결과 보고

(나) 초동조치

(나-1) 현장조치팀 현장 출동

- 출동지시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국립생물자원관장, 환경청장
- 출동인원/장비

구 분	검사시료채취반	야생동물모니터링반
출동인원	5명 내외	3명 내외
출동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보호장비 : 가슴장화, 방역복, 1회용 비닐장화, 방역마스크, 1회용 라텍스 장갑, 사진기, 망원경 ○ Eppendorf tube 또는 코니컬튜브 ○ 나무젓가락, 위생비닐봉지 ○ 폴리에스터 소재 면봉 ○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 9×9 종이 랙 ○ GPS ○ 분류표기용 라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보호장비 : 가슴장화, 방역복, 1회용 비닐장화, 방역마스크, 1회용 라텍스 장갑 ○ 관찰장비 : 쌍안경, 망원경, 삼각대, 사진기, 포충망 등 ○ GPS ○ 기록장 및 필기도구 ○ 조사지역 상세지도

※ 현장지휘소에 위치하여 보호 장비 착용 후 진입

- 피해현황 등 현장 확인 및 초동조치 지원

(나-2) 방역대책 지원방안 수립

- 주관 : 생물다양성과
- 야생동물 감염병 검사 강화 계획 수립
- 매개 야생동물 집단 서식지 통제 방안 수립

(다-3) 매개 야생동물 서식 및 이동 현황 모니터링

- 담당 : 국립생물자원관
- 조치내용
 - 야생동물 전문가 현장 조사 및 현황 파악
 - 매개 야생동물 종 및 개체수 파악·수시보고
 - 매개 야생동물 포획이 가능한 경우 추적 계획 수립 및 위치 추적장치 부착
 - 매개 야생동물 이동 현황 파악·수시보고

(다-4) 매개 야생동물 이동 예상지역 분석 및 통제지역 선정

- 담당 : 생물다양성과, 국립생물자원관
- 조치내용
 - 매개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따른 이동특성 분석
 - 매개 야생동물의 서식지 선호도 분석을 통한 이동 예상지역 도출
 - 매개 야생동물 서식 현황, 이동특성, 사람의 접근 가능성 등을 고려한 통제 지역 선정 및 통보

(다-5) 주관기관 역학조사반 합동 정밀조사 및 역학조사

- 담당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생물자원관
- 조치내용
 - 주관기관 역학조사반 현장 정밀조사 및 역학조사 지원
 - 매개 야생동물의 생태 특성 정보 및 감염병 검사 결과 제공
 - 주관기관 역학조사위원회의 참석

(다-6) 야생동물 서식지 출입 통제

- 담당 : 지자체(시·도/시·군)
- 조치내용
 - 야생동물 서식지 출입 통제
 -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및 서식지의 보존기관 출입통제
 - 매개 야생동물 포획물 처분 등 오염원 제거
 - 이동 통제 초소 운영 및 소독

(다-7) 대국민 홍보

- 담당 : 생물다양성과, 대변인실
- 조치내용
 - 야생동물 집단 서식지 출입통제에 대한 국민 협조 홍보
 - 대국민 홍보 기초자료 취합 및 관계기관 제공

3) 체크리스트

조치절차	조치내용	수행여부		비고
		YES	NO	
위기상황접수 및 보고/전파	위기상황 접수, 보고/전파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초동조치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지시, 소독 및 방역 물품 확보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소속기관 질병매개 야생동물 예찰 지시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대응조치	본부 감염병 상황반 설치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소속기관 감염병 대책반 설치	○		국립야생동물 질병관리원, 국립생물자원관, 지방환경청
	감염병 일일예찰 및 수시예찰 등 감시현황 파악, 소독 및 방역 물품 확보	○		국립야생동물 질병관리원
	질병매개 야생동물 서식지 및 이동특성, 서식현황 조사	○		국립생물자원관
	감염병 일일예찰 및 수시예찰 등	○		지방환경청
후속조치	위기 상황 지속 주시	○		환경부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부서	임무와 역할
생물다양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대응 상황반 운영 ○ 소속기관 및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 상황 전파 ○ 매개 야생동물 서식지 통제 지역 선정 ○ 서식지외 보존기관 통제 검토 ○ 야생동물 방역 대책 마련 ○ 살처분·소독 등 조치사항 시달 ○ 대국민 홍보 강화
국립야생동물 질병관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개 야생동물 시료 채취 및 감염병 검사 강화 ○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국립생물자원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조사 및 이동특성분석 ○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유역(지방)환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동물 폐사체 발생상황 모니터링 강화 ○ 매개 야생동물 검사 시료 채취 및 검사 의뢰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VI

기관 대응수칙

1. 재난관리체계도 및 절차도
2. 환경부 감염병 재난 대응 프로세스
3. 환경부 감염병 재난 대응 주요 협업기능
4. 감염병 대응 관계기관 주요 임무
5. 비상연락망

부 처	주 요 임 무			
	[관심] 질환별 대책안 운영 단계	[주요]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단계	[경제]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단계	[심각] 별정부처 출범 대응 단계
법무부	· 교도소 등 수용·보호시설 감염병 예방·관리	· 내·외국인 출입국기록 제공 등 지원 · 교도소 등 수용·보호시설 감염병 예방·관리	· 내·외국인 출입국기록 제공 등 지원 · 출입국관리 강화 대책 시행 · 교도소 등 수용·보호시설 감염병 예방·관리	· 내·외국인 출입국기록 제공 등 지원 · 출입국관리 강화 대책 시행 · 교도소 등 수용·보호시설 감염병 예방·관리
국토교통부	· 항공, 철도, 버스 등 중시차 및 승객에 대한 예방관리	· 항공, 철도, 버스 등 중시차 및 승객에 대한 예방관리 · 다중이용 교통시설 중시차 및 승객 방역 활동 · 다중이용 교통시설 승객 관련 접촉차 조사 필요	· 필요시 항공기 감란 내지 운항 조정 등 · 다중이용 교통시설 중시차 및 승객 방역 활동 · 다중이용 교통시설 승객 관련 접촉차 조사 필요	· 필요시 항공기 감란 내지 운항 조정·제한 · 다중이용 교통시설 중시차 및 승객 방역 활동 · 다중이용 교통시설 승객 관련 접촉차 조사 필요 · 택시, 시외차, 내륙차 등 항공수송 지원 · 항공보안원차 건조화 또는 생략 · 항공노출 차단 대책
해양수산부	· 항만 출입통제 · 항만시설·신박관리	· 항만 출입통제 및 항만시설·신박 관리 강화, 방역 지원 · 항만-이커터미널 근로자, 이송차 등에 대한 방역 지원	· 여객선 등 운항일정 조정 지원 · 항만-이커터미널 출입통제 및 방역 지원 · 항만-이커터미널 근로자, 이송차 등에 대한 방역 지원	· 여객선 등 운항일정 조정 지원 · 항만-이커터미널 출입통제 및 방역 지원 · 항만-이커터미널 근로자, 이송차 등에 대한 방역 지원
고용노동부	· 사업장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 사업장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및 산업보건유관 단체와 관련 정보 공유	· 사업장 감염병 예방관리 및 홍보	· 사업장 감염병 예방관리 및 홍보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 업무연속성계획(BCP) 가이드라인 배포	· 기업 업무연속성계획(BCP) 가이드라인 배포	· 기업 업무연속성계획(BCP) 가이드라인 배포 및 가용 준비 지원	· 기업 업무연속성계획(BCP) 가이드라인 배포 및 가용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해외 여행객 감염병 예방 홍보	· 발생감염병 정보제공 및 주의사항 홍보	· 발생감염병 정보제공 및 주의사항 홍보	· 발생감염병 정보제공 및 주의사항 홍보
식품의약품 안전처	· 감염병 유행 의심 (수입)식품 검사	· 감염병 치료제 등 신속 허가신청 방안 검토 · 감염병 유행 의심 (수입)식품 검사	· 감염병 치료제 등 신속 허가검정	· 감염병 치료제 등 지속 생산·관리 · 감염병 치료제 등 신속 허가검정
경찰청	· 필요시 인력지원 및 정보 제공 협조	· 국가필수시설(비축물자 보관·관리 시설 등) 경비 지원 · 환자관리 및 출입통제 등 지원으로 사회 질서유지 · 가동 범위 내 인력지원 · 환자, 접촉차 등 추적 관리 대상자 위치정보 제공	· 국가필수시설(비축물자 보관·관리 시설 등) 경비 지원 · 환자관리 및 출입통제 등 지원으로 사회 질서유지 · 인력지원 및 예방관리 · 환자, 접촉차 등 추적 관리 대상자 소재 파악 및 위치정보 제공	· 국가필수시설(비축물자 보관·관리 시설 등) 경비 지원 · 환자관리 및 출입통제 등 지원으로 사회 질서유지 · 인력지원 및 예방관리 · 환자, 접촉차 등 추적 관리 대상자 소재 파악 및 위치정보 제공
병무청	· 병역의무자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및 홍보·교육	· 병역의무자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및 홍보·교육	· 병역의무자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및 홍보·교육 · 필요시 검사, 교육, 훈련 등 지원 증진 검토	· 병역의무자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및 홍보·교육 · 필요시 검사, 교육, 훈련 등 지원 증진 검토
지자체	· 지역 감염병 대응 조치 및 인프라 정비	· 지역 방역 인프라 강화(역학조사, 현장방역, 환자 이송, 격리차 관리, 접촉차 파악 지원, 주민대상교육 등)	· 지역 방역 인프라 강화(역학조사, 현장방역, 환자 이송, 격리차 관리, 접촉차 파악 지원, 주민대상교육 등)	· 지역 방역 인프라 강화(역학조사, 현장방역, 환자 이송, 격리차 관리, 접촉차 파악 지원, 주민대상교육 등)

기 관 명	관련 부서	연 락 처	
		전 화	Fax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	044-201-3793	044-201-5579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	044-200-5783	044-200-5789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044-202-8876	044-202-809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044-203-4222	044-203-4722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예방정책과	043-719-1723	043-719-1640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 (위기관리센터)	02-3150-1641	02-3150-3657
병무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운영지원과	042-481-2662 042-481-2871	042-481-2670 042-481-2860

5 비상연락망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기관명	부서명	연락처	
		전화	Fax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044-202-2500	044-202-3928
	정책정보과	044-202-2510, 2505, 2506	044-202-3928
	비상안전기획관실	044-202-2652	044-202-3932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	043-719-9000	043-719-9099
	위기관리총괄과	043-719-9050, 9081, 9082	043-719-9099
	중앙상황실	043-719-7979	043-719-9459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기 관 명	관련 부서	연 락 처	
		전 화	Fax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02-800-4372	02-800-4399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실	02-800-7615	02-800-4740
	국정상황실	02-800-7154	02-800-4860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044-200-2293 044-200-2294	044-200-2318
행정안전부	보건사회재난대응과	044-250-6156	044-205-8993
소방청	119구급과	044-205-7633	044-205-9119
해양경찰청	외사과	032-835-2468	032-835-2968
동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22	044-868-0469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41	044-201-7261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02-2100-8202	02-2100-7995
국방부	감염병대응팀	02-748-6781	02-748-6659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962	044-203-6598
법무부	비상안전기획관	02-2110-3012	02-2110-0315

□ 소속·산하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 관 명	연 락 처	기 관 명	연 락 처
국립이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	062-949-4324	대전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	042-270-5442
국립이생동물 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	062-949-4390	광주광역시 환경보건과	062-613-4145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031-790-2640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	052-229-3145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055-211-1631	세종특별자치시 동물위생방역과	044-300-7615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062-410-5226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031-8008-4239
금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042-865-0743	강원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과	033-249-2776
대구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053-230-0794	충청북도 환경정책과	043-220-4034
원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033-760-6062	충청남도 탄소총량정책과	041-635-2712
전북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063-238-8854	전라북도 기후환경정책과	063-280-4533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	02-2133-2148	전라남도 환경정책과	061-286-7032
부산광역시 환경정책과	051-888-3634	경상북도 환경정책과	054-880-3522
대구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	053-803-4211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055-211-6636
인천광역시 환경안전과	032-440-3716	제주도 환경정책과	064-710-6073

□ 전국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센터명	개소일	소재지	연락처
서울	2017.07.01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02-880-8659
부산	2008.12.16	부산시 사하구 낙동남로 1240-2	051-209-2093
인천	2018.03.27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3-20	032-858-9702
대전	2015.10.08	대전시 유성구 궁동 대학로 99	042-821-7930
광주	2017.03.28	광주시 서구 유촌동 719-2일원	062-613-6651
울산	2008.04.18	울산시 남구 옥동 506-3	052-256-5322
경기	2009.03.24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천길 132-93	031-8008-6212
경기북부	2021.09.01	경기 연천군 전곡읍 양연로 1113번길 179-16(양원리 525-2)	031-8030-4451
강원	2006.09.27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033-250-7504
충북	2007.09.27	충북 청주시 청원구 양청4길 45	043-249-1455
충남	2010.09.09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화리 1	041-334-1666
전북	2009.04.30	전북 익산시 고봉로 79번지	063-850-0983
전남	2007.40.11	전남 순천시 순천만길 922-15	061-749-4800
경북	2006.05.16	경북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2150-44	054-840-8251
경남	2008.05.14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055-754-9575
제주	2010.11.25	제주도 제주시 산천단남길 42	064-752-9982
야생동물 의료센터	2010.08.17	전남 구례군 마사면 화엄사로 402-31(황전리 41)	061-783-9585
북부보전 센터	2014.03.27	강원 인제군 북면 쇠리길 106-40(한계리 145-2)	033-463-9120

VI

부록

1. 서식(공통)
2. 기타 참고자료

VII. 부록

1 서식(공통)

가. 「상황보고서」 양식

○○감염병 상황 보고 (최초,중간,최종)

○○년 ○월 ○일, ○○:○○현재			
보고자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		팩스	

제 목 : 개 요 1. 접수시간/출처 : 2. 사고내용 3. 현장 조치사항 4. 우리부 조치사항 5.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중간·최종보고서에 작성) 6. 참고사항 - 언론 동향, 여론, 기타	배부처 장 관 ○ 차 관 ○ ○○실장 ○○국장 ○○국장 ○○담당 청와대상황실 국가안보실 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부 ○○청 ○○청
--	--

나. 「위기상황 판단/평가회의 보고서」 양식 및 작성요령

① 위기상황 판단/평가회의 보고서

② 위기유형	
③ 경보내용	
④ 보고번호	⑤ 기관명
⑥ 관련근거(출처)	
⑦ 통보기관	
⑧ 1. 관련상황/정보	
⑨ 2. 분석/판단	
※① 3. 조치사항	
※② 작성자	○○국·실 ○○과 직책 (성 명) (전화)

- 작성요령

- ① 보고서의 종류 : 위기상황판단과 위기평가회의로 구분 작성
 - 위기상황판단보고서 : 위기경보가 없이 상황전파 시 사용
 - 위기평가회의보고서 : 위기평가회의 후 위기경보 발령시 사용
- ② 위기유형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유형, 또는 간략하게 제목 서술
- ③ 위기경보 내용 : 표시하거나 없을 시에는 빈칸으로 둘
- ④ 보고번호 : 부처에서 부여한 일련번호
- ⑤ 기관명 : 부처/기관명 기재
- ⑥ 관련근거 : 정보의 출처로서, 언론, 문서, 직무 등
- ⑦ 통보기관 : 관련보고서 전파 부처/기관
- ⑧ 관련상황/정보 : 부처 판단 결과
- ⑨ 분석/판단 : 부처 판단 결과
- ※ 조치사항 : 부처/기관의 조치사항, 향후 추진계획 등
- ※ 작성자 : 부처/기관의 부서와 직책 연락처 기재

환경부	보도자료 <i>다시 생각하는! 새로운 국민의 나라</i>
보도시점 2023. 00. 00. (0) 00:00 배포 2023. 00. 00. (0)	

00국가 야생동물 000 질병 감염 확인

금일(0000.00.00) 00국가 00시에서 폐사체로 발견된 야생동물에서 신종 전염병 병원체가 검출되었습니다.

00국가 감염병 관리 당국은 병원체가 검출된 즉시 국제기구 및 인접국가 등에 검출 현황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와 질병관리청은 가용한 재원을 통해 상세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000 질병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정보가 파악되는 대로 언론 등을 통하여 공표될 것입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책임자	과 장	000 (044-201-0000)
		담당자	사무관	000 (044-201-0000)



라. 국민행동요령

□ 안전한 야외활동을 위한 야생진드기 예방요령 안내서(리플렛)

야생진드기 예방요령

야생진드기 예방요령

야생진드기 예방요령

1. 가리고 뿌리기

2. 피하고 피하기

3. 털고 씻기

□ SFTS 예방을 위한 3대 주요 행동수칙

1. 가리고 뿌리기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세요.

2. 피하고 피하기

야생동물 접촉은 위험합니다! (먹는 행위 - 잡는 행위)

3. 털고 씻기

반려동물도 진드기에 물릴 수 있어요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행동 요령(리플렛)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란?

- 돼지고기(사육돼지, 멧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바이러스의 생존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음
- 멧돼지도 감염되어 폐사할 수 있으며, 폐사체는 바이러스 전파의 오염원이 될 수 있음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음

이럴 때 신고하세요!

1. 멧돼지가 살아 있으나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2. 죽어 있는 멧돼지를 발견한 경우

※ 신형용 무늬가 새겨진 폐사체 나뭇 가지에 멧돼지 사체가 놓여 있음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 시 포상금 20만원(양성·음성 동일 지급)

* 멧돼지 폐사체 검사결과 확인 후 지급, 단 1인당 연간 60만 원까지 수령 가능(별첨) 신고 등은 차액 지급 가능

발견했을 때

- 멧돼지에 접근 및 접촉 금지
- 발견지점 주소 및 주변 상황 확인
- 가시한 경우, 발견지점 나무 등에 표시
- 정확한 주소 및 포상금 수령
- 신고한 주소나 위치 및 현장 사진 촬영

신고하는 곳

- 정부민원콜센터 ☎ 110
- 시·군·구 환경담당부서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감염병응급실
- ☎ 032-560-7141-7156
- ☎ 062-949-4330-4334

신고하는 요령

- 00월 00일 00시 경에
- 00시(00분) 00분(00초) 000부(0000)에서
- 죽은(살아있는) 멧돼지를 발견했습니다.

※ 신고시간: 00:00에 한해서 00:00-00:00(00:00)

멧돼지 ASF 예방 행동 요령

1. 야외 활동 시 낚은 용수물을 버리거나 야외활동에 참여하기 금지
2.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 즉시 신고
3. 멧돼지 폐사체 및 야생멧돼지 접촉 금지
4. 야생멧돼지 사육 금지
5. 폐사체 발견 시, 신고 및 확인까지 농정콜센터

2 기타 참고자료

가. SARS 관련 야생동물 수입통제 대책(환경부)

□ 사스와 야생동물과의 관계

- 야생동물이 사스를 전파시킨다는 증거는 없으나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WHO 발표)
- 다음 3종에서 SARS코로나바이러스와 유사 바이러스 또는 항체 검출
 - 마스크팜시비트(Masked Palm Civet, 사향삼과 동물), 너구리(Raccoon Dog), 중국족제비오소리(Chinese Ferret Badger)

□ 외국의 SARS 관련 야생동물 수입통제 사례

- (일본) 사스 관련종 3종의 수입금지(03.7.14)
- (호주) 마스크팜시비트·노루 수입금지, 족제비·너구리는 동물원용만 수입허용
- (중국, 미국 등) 야생동물로부터 사스 전파 가능성을 증명할 과학적 근거가 없어 수출입 규제를 위한 규정은 마련하지 않음
 - ※ 단, 미국은 관련 동물을 가급적 수입하지 말 것을 권고

□ SARS 관련 야생동물 수입규제 강화 조치

- 중국족제비오소리를 수출입허가대상 야생동물로 지정·고시(환경부 고시 제2003-184호, 2003.10.11)하여 수입 불허 법적 근거 마련
- 사스주의보 발령시 마스크팜시비트(사향고양이), 너구리, 중국족제비오소리 등 3종은 수입허가권자인 유역(지방)환경청 및 시도지사(시장·군수·위임)에게 수입을 불허토록 지시

- 마스크팜시비트를 9개국(인도, 이탈리아,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수입하는 경우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 III에 해당하여 유역(지방)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 가능

* 법적 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허가)

- 너구리, 중국족제비오소리 및 인도 등 9개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마스크팜시비트를 수입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 가능

* 법적 근거 : 동법 제21조(야생동물의 수출입 허가)

※ 단, SARS 전파 가능성이 없는 가죽 및 피혁제품 등 가공품은 현행대로 수입 허가

- 추후 SARS 관련성이 밝혀지는 동물들에 대해서는 위의 방안에 준하여 조치

나. 야생동물 서식밀도 등 실태조사(평상 시)

□ 야생동물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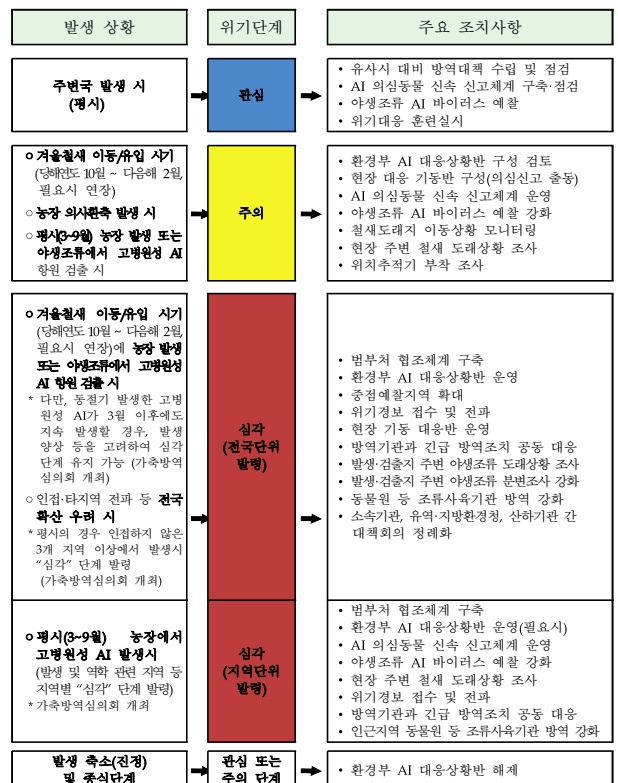
- 조사지점수 : 전국 810개 조사구
- 조사횟수 : 격년제로 조사(2년 1회, 405개 조사구)
- 조사기관 : 국립생물자원관(총괄), 유역(지방)환경청(조사)
- 조사내용
 - 수렵동물(16종) 및 환경지표동물(10종) 개체군 변동 및 분포조사

□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 시기 : 매년 10월 ~ 익년 3월
- 대상 : 전국 200여 개 철새도래지
- 조사기관 : 국립생물자원관(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
- 조사내용 : 겨울철새가 도래한 전국의 습지에서 동일한 기간에 동시 조사(개체수, 종류 등) 실시

다.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

□ 발생 상황별 조치사항



1) 『관심』 단계

◆ 주변국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시(평시)

기관명	구분	조치내용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임무/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황 파악 및 대응방안 강구 소속기관 및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 상황 전파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생조류 AI 바이러스 상시예찰 총괄 야생조류에서의 AI 감염확산 방지로 멸종위기종 등 야생조류 개체군 보호대책 마련 주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와 AI 상시예찰 결과 상호공유 위기대응 훈련 실시 유관기관 대상 AI 대응책 교육
국립야생동물 질병관리원	임무/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생조류 AI 예찰 계획 수립 및 예찰 결과 전파 야생동물 폐사체 발생 상황 모니터링 국내·외 야생조류 AI 현황 파악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생조류 AI 바이러스 예찰 계획 수립 및 시행 AI 검사 및 결과 전파 해외 AI 발생상황 조사
국립생물 자원관	임무/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개 야생동물의 국내유입 현황 조사 매개 야생동물의 분포 및 이동경로 조사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철새 이동상황 모니터링(위치추적 포함) 계획 수립 및 시행 주요 철새 도래지 철새 도래상황 조사 및 결과보고
유역·지방 환경청	임무/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생동물 폐사체 발생상황 모니터링 소독약품, 방역복, 시료 채취 물품 확보 실태 점검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역·지방환경청 상시예찰지역 폐사체 관찰, 주요

기관명	구분	조치내용
지자체 (시·도/ 시·군·구)	임무/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식종 파악(월 1회 수준) 소독약품 등 비상 방역물자 조달계획 수립 야생조류 AI 방역 비상연락망 점검 감염의심동물 발견 시 신속 신고체계 확립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병의심 야생동물의 신고체계 점검 소독약품, 방역복, 시료 채취 물품 확보 실태 점검 질병 의심 야생동물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운영 체계 구축 관내 철새도래지 현황 파악 동물원 등 조류 사육·전시시설 AI 방역 계획 수립 유사시 대비 야생동물 살처분·서식지 통제 등을 위한 인력·장비 확보 등 비상체계 점검 폐사체 수거 및 이송(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2) 『주의』 단계

- 겨울철새 이동/유입시기(당해연도 10월 ~ 다음해 2월, 필요시 연장)
- 농장 의사환축 발생시, 평시(3~9월) 농장 발생 시 또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시

기관명	구분	주요내용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임무/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황 파악 및 대응방안 강구 소속기관 및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 상황 전파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생조류의 AI 대응상황반 구성 검토 소속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산하기관 협조체계 구축 감염의심 야생조류 발견 시 유관기관 신속 전파 감염의심 야생조류 신고 홍보 야생조류 AI 홍보 활동
국립야생동물 질병관리원	임무/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생조류 AI 예찰(분변, 폐사체 등 시료채취) 야생조류 AI 정밀검사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생조류 AI 예찰 강화 야생동물 폐사체 발생 상황 모니터링 강화 매개 야생동물 시료 채취 및 가족 관련 질병 검사 지원 관계 기관 합동 정밀조사 지원
국립생물 자원관	임무/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개 야생동물의 분포 및 이동경로 조사 관계기관 합동 정밀조사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도래지 철새 서식현황 조사 연간 철새 이동상황 모니터링(위치추적 포함) 시행
유역·지방 환경청	임무/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생동물 폐사체 발생상황 모니터링 매개 야생동물 검사 시료 채취 및 검사 의뢰

기관명	구분	주요내용
지자체 (시·도/ 시·군·구)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역·지방환경청 상시예찰지역 폐사체 관찰, 주요 서식종 파악(2주 1회 수준) 야생조류 AI관련 신고 전화 운영 감염의심 동물 발견 시 신속 신고(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환경부)
	임무/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생 지역 인근 야생동물 서식지 관리 및 감시 강화
지자체 (시·도/ 시·군·구)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병 의심 야생동물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 운영 상황 점검 관내 철새도래지 현황 파악 동물원 등 조류 사육·전시시설 AI 방역 계획 이행 상황 점검 유사시 대비 야생동물 살처분·서식지 통제 등을 위한 인력·장비 확보 등 비상체계 점검 폐사체 수거 및 이송(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3) 『심각』 단계

- 겨울철새 이동/유입 시기에 농장 발생 또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시(당해연도 10월 ~ 다음해 2월, 필요시 연장)
- 평시(3~9월) 인접·타지역 전파 등 전국 확산 우려 시(인접하지 않은 3개 지역(시·군) 이상 발생시)

기관명	구분	주요내용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임무/역할	야생조류 AI 대응 상황 총괄 소속기관 및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 상황 전파
	조치사항	야생조류 AI 대응상황반 운영 범부처 협조체계 가동 야생조류 AI 진단결과 유관기관 신속 전파 폐사체 또는 감염의심 야생조류 신고 홍보 강화 야생조류 AI 대응수칙 대국민 홍보 활동 강화
국립야생동물 질병관리원	임무/역할	야생조류 AI 예방(분변, 폐사체 등 시료채취) 강화 야생조류 AI 정밀검사 및 신속전파
	조치사항	철새서식지 및 AI 발생농가 주변 예방 강화 야생동물 폐사체 발생 상황 모니터링 강화 야생조류 AI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필요시 현장기동대응반 현장 출동
국립생물 자원관	임무/역할	매개 야생동물의 분포 및 이동경로 조사 관계기관 합동 정밀조사
	조치사항	야생조류 생태전문 인력 지원 또는 자문 주요 도래지 철새 서식현황 조사(월 1회) 연간 철새 이동상황 모니터링(위치추적 포함) 시행
유역·지방 환경청	임무/역할	야생동물 폐사체 모니터링 강화 매개 야생동물 검사 시료 채취 및 검사 의뢰
	조치사항	유역·지방환경청 상시예찰 강화(주 1회 수준)

기관명	구분	주요내용
지자체 (시·도/ 시·군·구)	임무/역할	야생조류 AI 검출지역 및 AI 발생농가 주변 철새도래지 예방 강화 야생조류 AI 관련 신고 전화 운영 감염의심 동물 발견 시 신속 신고(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환경부)
	조치사항	발생 지역 인근 야생동물 서식지 관리 및 감시 강화 질병 의심 야생동물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 운영 상황 점검 AI가 검출된 야생조류 서식 철새도래지에 대한 출입관리 조치 시행·점검 동물원 등 조류 사육·전시시설 AI 방역 계획 이행 상황 점검 야생동물 살처분·서식지 통제 등을 위한 인력·장비 확보 등 비상대응 체계 유지 폐사체 수거 및 이송(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동물원 등 전시· 관람·보전시설	조치사항	인근 지역 가금 AI 발생 현황 점검 비발생 지역에서 조류관련 먹이자원의 확보 및 비축 사육 기관 내 방역 및 예방 감수성 동물의 이동 금지
야생동물구조 센터	조치사항	관할지역 가금 AI 발생현황 점검 및 야생조류 이상개체에 대한 구조 제한 비발생 지역에서 조류관련 먹이자원의 확보 및 비축 사육 기관 내 방역 및 예방 감수성 야생조류 폐사체 반입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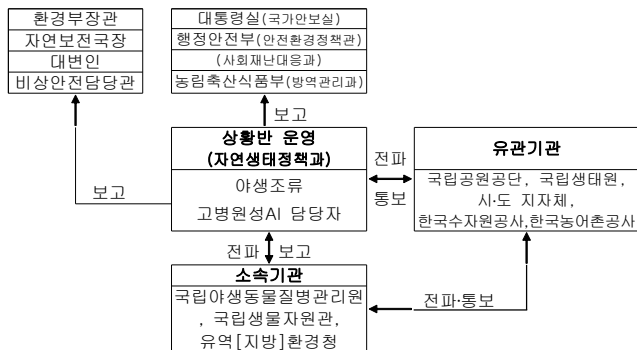
4) 진정 및 종식단계

주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위기경보를 조정시 소속·산하 기관 및 지자체 등에 상황을 전파한다. 위기 경보가 “주의” 또는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시 야생조류 예방, 상황반 운영 등 조사 및 대응 범위를 변경한다.

5)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경우, AI 위기경보단계에 관계없이 3월~9월에는 「주의」 단계, 당해 10월~다음해 2월에는 「심각」 단계의 조치사항에 준하여 조치한다. 세부사항은 제4장의 야생조류 조류 인플루엔자 표준행동요령에 따른다.

□ 야생조류 고병원성 AI발생시 전파대응체계(상황근무자)



라. 철새 보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철새 보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2012. 12.

환 경 부

I 총 칙

1. 목 적

이 가이드라인은 철새도래지에서 낚시, 탐조 및 지역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행사가 먼 거리를 이동하는 철새 및 철새가 휴식하는 철새도래지에 미칠 수 있는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임

2. 용어의 정의

가. “철새도래지”란 일정 이상의 중 및 개체수의 철새가 정기적으로 찾아와 머무는 곳으로 주로 나그네새 및 겨울철새가 많이 모이는 지역을 철새도래지라고 칭함

나. “나그네새”란 번식 전후 시기인 봄과 가을에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철새로 특정 시기·지역에 많은 수가 무리를 지어 이동·서식하는 경향이 있음

예) 서해안 갯벌에 봄과 가을 통과하는 도요·물떼새류, 섬 및 내륙의 특정 지역을 봄과 가을에 통과하는 솔새 및 딱새류 등 많은 종

다. “겨울철새”란 우리나라에서 겨울에 월동하는 철새로 무리지어 이동·서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멸종위기종이 많이 포함됨

예) 독수리, 두루미류, 오리류, 기러기류 등

라. “여름철새”란 우리나라에서 봄부터 여름까지 번식하는 철새로 특히, 번식기간(대부분 4~6월에 집중)에는 방해를 주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야 함

예) 백로류, 제비, 개개비, 쇠제비갈매기 등

3. 철새도래지에서 방해를 줄 수 있는 행위(지역행사)

- 가. 낚시
- 나. 탐조행사
- 다. 사진촬영
- 라. 이 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는 일체의 지역행사

II 철새도래지 내 방해를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공통 고려사항

1. 행정기관 및 주취기관 유의사항

- 가. 철새의 습터인 호수, 저수지, 만(灣), 강, 하천 등에서 휴식 및 취식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위(지역축제 행사)를 허용한다.
- 나. 적절한 참여자 수와 적정 행사 위치 및 시기 선정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학술단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
- 다. 지역 행사 참가자에게 본 가이드라인 및 철새 보호를 위한 기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자연보호를 권장한다.
- 라. 대규모(100명 이상) 지역축제 행사 전 충분한 사전검토 및 유역(지방)환경청과 사전협의를 실시한다.

2. 참가자 유의사항

- 가. 철새는 시력이 매우 좋고 예민하며 경계심이 많은 동물이므로 항상 조심해야 함을 명심한다.
- 나. 철새서식 등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는 집단행동, 먹이를 직접주는 행위 및 접촉하는 행위, 등지 및 알에 접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III 철새를 배려하는 낚시행위를 위한 고려사항

1. 행정기관 및 주취기관 유의사항

- 가. 철새가 위협을 느낄만한 과도한 소음행위 자체를 위하여 확성기 및 마이크 사용을 금지한다.
- 나. 호수, 저수지, 만(灣), 강, 하천 등에서 철새가 1km이내에 100마리 이상 무리지어 있는 경우에는 낚시는 금지한다.
- 다. 법적인 일출시간 30분 전부터 법적인 일몰시간 30분 이후까지 허용한다.
- 라. 물새의 2차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납추 및 기타 납으로 만든 낚시 제품의 이용을 금지한다.
- 마. 보호구역에서는 낚시를 위해 폴(pole)/낚싯줄(line)이나 로드(rod)/릴(reel)만 사용할 수 있다.
- 바. 호수 등에서 낚시에 활용되는 튜브 및 기타 부유장치의 이용을 금지한다.

2. 참가자 유의사항

- 가. 철새의 휴식 및 취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낚시 장소를 선정한다.
- 나. 쓰레기는 본인이 수거해 간다.
- 다. 새가 놀라서 날아가지 않도록 큰소리를 내거나 뛰지 않고 돌 등을 던져 새를 쫓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라. 취사, 흡연 및 자극적 냄새를 유발하는 식품 등의 섭취는 예민한 철새에게 스트레스를 주므로 가급적 피한다.

IV 철새를 배려하는 탐조행사를 위한 고려사항

1. 유의사항

- 가. 망원경이나 쌍안경을 이용하여 조류에게 방해를 주지 않도록 되도록 원거리를 유지하여 관찰한다.
- 나. 고정 탐조시설이나 임시 은폐시설, 위장텐트 또는 은폐망 등을 활용하여 몸을 은폐한 후 탐조한다.
- 다. 주변 환경과 다른 복장과 진한 향수는 조류에게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한다.
- 라. 새가 놀라서 날아가지 않도록 큰소리를 내거나 뛰지 말고 돌 등을 던지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마. 풀이나 나무를 훼손하거나, 열매를 함부로 채취하는 등 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V 철새를 배려하는 사진촬영 및 지역행사 등을 위한 고려사항

1. 유의사항

- 가. 사진촬영시 가능한 탐조대 또는 임시 은폐시설, 위장텐트, 은폐망 등을 설치하여 몸을 은폐하며 망원렌즈 등을 사용하여 원거리를 유지하며 촬영한다.
- 나. 조명이나 플래시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회수나 조도를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 다. 삼각대나 탐조대 등 촬영 장비의 설치가 초본식물이나 곤충 등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고려한다.

라. 취사, 흡연 및 자극적 냄새를 유발하는 식품 등의 섭취는 예민한 철새에게 스트레스를 주므로 가급적 피한다.

마. 마이크, 확성기, 팽파리 등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고성방가를 자제한다.

바. 철새서식 등에 방해 줄 우려가 있는 집단행동, 먹이를 직접주는 행위 및 접촉하는 행위 등은 하지 않는다.

사. 행사 종료후 쓰레기 제거 등 철새도래지 주변에서 환경정화에 유의한다.

아. 주변 환경과 다른 원색적 복장착용 및 진한 향수는 조류에게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한다.

자. 철새 촬영 목적 이외의 지역행사 등을 개최하는 주최기관(자)은 전문 기관 및 학술연구기관에 자문을 구하여 철새의 월동시기와 통과시기 및 중요 철새도래지를 피하여 개최한다(부록 참조).

2. 기타 운영 관련 권고사항

가. 습지나 초지, 관목 지역과 같이 훼손되기 쉬운 지역인 경우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동을 확보하여 통행한다.

나. 행사 참여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 이용시 설치된 도로와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한다.

다.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화장실은 지정된 장소를 이용한다.

라. 가급적 화기를 지니지 말고 직접 취사보다는 도시락 등을 준비하여 화재 발생에 유의한다.

<참고> 겨울철새 및 통과철새 중요도래지

□ 겨울철새 중요 도래지(월동기간 : 10월~익년 3월)

[중요 도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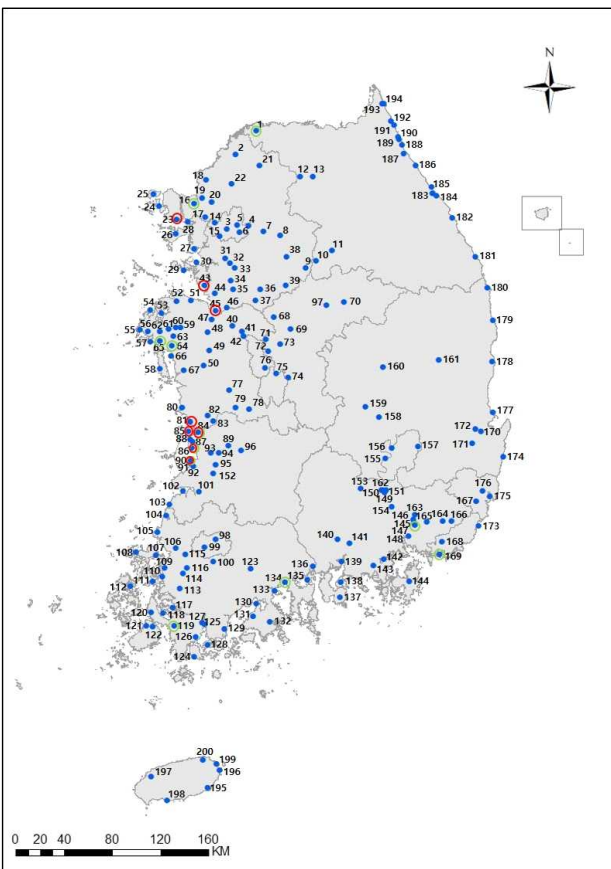
번호	명 칭	위 치	동시센서스 지점
1	철원평야	강원도 철원군	1
2	한강하구	경기도 고양시, 김포시	16
3	천수만(간월호, 부남호)	충남 서산시	64, 65
4	금강하구	전북 군산, 충남 서천	84
5	동진강하구	전북 김제시	90
6	만경강하구	전북 김제시	86
7	고천암호	전남 해남군	119
8	순천만	전남 순천시	134
9	주남저수지	경남 창원시	145
10	낙동강하구	부산시	169

[인접지역]

번호	명 칭	위 치	동시센서스 지점
1	장항해안	충남 서천군	81
2	금강호	전북 군산시	83
3	영암호	전남 영암군	117
4	금호호	전남 해남군	118
5	여자만	전남 고흥군	133
6	낙동강하류	부산시	168

□ 통과철새 중요 도래지(통과기간: 4월~5월, 8월~10월)

번호	명 칭	위 치	동시센서스 지점
1	강화도	인천시 강화군	19
2	남양만	경기도 화성시	34
3	아산만	충남 아산시	36
4	장항해안	충남 서천군	66
5	금강하구	전북 군산시	70
6	유부도	충남 서천군	69
7	만경강하구	전북 김제시	72
8	동진강하구	전북 김제시	75



<그림>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조사 지점 200개소와 겨울철새(녹색) 및 통과철새(적색) 중요 도래지

마.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

□ 위기단계별 조치사항

발생상황	위기단계	주요 조치사항(환경부)
주변국 ASF 발생	관심	· 검역지역 등 ASF 유입가능지역 예찰 강화 · 야생멧돼지 서식현황 파악 · 신고체계 구축·홍보 및 유사시 대비 비상방역태세 점검
의사환축 발생	주의	· ASF 상황반 구성 · 지방(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 현장대응반 구성 · 의사환축 발생능가 주변 야생멧돼지 서식현황 파악 · 의사환축 발생능가 주변 현장조사 · 멧돼지 중점예찰구역 설정범위, 이동차단시설 설치계획 검토 · 폐사체 등 신고 독려를 위한 보도자료 배포
국내 발생	심각	· ASF 상황반 운영 · 야생멧돼지 발생 및 확산방지대책 수립·시행 (관리지역 설정, 수색, 이동차단시설 설치, 포획 등) · 지방(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 현장대응반 운영 · 멧돼지 중점예찰구역 설정 · 총기포획 유보(제한)지역 지정 및 관리 · 멧돼지 중점예찰구역 내 동물원 등 사육시설 소독·예찰 강화 및 이동통제 · 관리지역 및 멧돼지 중점예찰구역 등 예찰 강화 · 관리지역 및 멧돼지 중점예찰구역 등 야생멧돼지 서식현황 파악 · 상기 조치사항 관련 보도자료 배포
발생축소 진정 및 중식 단계	위기단계 하향	· 조기 근절을 위한 사육관리 추진 · 중식 및 복구 추진 · 관리지역 및 멧돼지 중점예찰구역 해제 · 총기포획 유보(제한)지역 해제

I. 관심단계 발령 시 조치사항(주변국 발생 시)

기관명	조치사항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생멧돼지 ASF 예방대책 운영 야생멧돼지 ASF 폐사체 신고 등 행동요령 홍보 관계기관 T/F · 자문단 운영 및 협조 요청
국립야생동물 질병관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생멧돼지 ASF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야생멧돼지 폐사체 및 포획개체 신고체계 운영·시료확보 야생멧돼지 ASF 진단 및 검사결과 전파 해외 야생멧돼지 ASF 발생상황 조사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생상황 모니터링 지자체 담당자 및 수렵인 등 ASF 홍보
국립생물 자원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생멧돼지 서식현황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시행 멧돼지 외 매개우려 동물(파리, 너구리, 까마귀 등) 조사계획 수립 및 시행
유역·지방 환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내 야생멧돼지 서식 현황 파악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생 상황 모니터링 질병 의심 야생동물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운영 야생멧돼지 ASF 방역 비상연락망 점검
지자체 (시·도/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접수 시 조동대응 폐사체 신고·접수 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보고 및 시료채취·이송 협조 질병 의심 야생동물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운영 유사시 대비 야생동물 서식지 통제 · 이동차단시설 설치 등을 위한 인력·장비 확보 등 비상체계 점검 소독약품 등 비상 방역물자 조달계획 수립 인력(수의사, 경찰, 행정지원, 방역지원 인력 등), 장비(소독약품, 방역복, 시료채취 등) 실태점검 및 적정 확보계획 수립 동물원 등 멧돼지 사육시설 ASF 방역계획 수립·점검 설치된 멧돼지 이동차단시설 점검, 보수 및 보강, 이동차단시설 취약구간(울타리 출입문, 교량하부, 배수로 등) 관리 강화
국립공원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공원 내 야생멧돼지 서식현황 합동조사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생 상황 모니터링(국립공원 내, 인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사체 발령 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보고 및 사체(시료) 채취·이송 협조
국립생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생멧돼지 서식현황, ASF 발생상황·확산예측 등 생태계 모니터링 협조
(사)야생생물 관리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생멧돼지 ASF 예방·대응 적극 협조 수렵인 대상 ASF 대응 교육·홍보 수렵개체 혈액 등 시료송부 전국 야생멧돼지 수렵현황 파악
동물원 등 전시· 관람·보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SF 방역관련 이행사항 점검 및 대응계획 수립

II. 주의단계 발령 시 조치사항(의사환축 발생 시)

기관명	조치사항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ASF 상황반 구성 긴급 방역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전파체계 구축 방역인력 지원체계 총괄 점검 기관별 ASF 현장대응반 총괄 관리·감독 멧돼지 증검예찰구역(또는 관리지역) 설정범위 검토
국립야생동물 질병관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ASF 현장대응반 구성 의사환축 발생농가 주변 현장조사* * 멧돼지로부터 감염 가능성, 환경시료 조사 등 멧돼지 증검예찰구역(또는 관리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지원 야생멧돼지 ASF 진단 및 검사결과 전파 지자체 방역 조치에 필요한 기술지원
국립생물 자원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SF 현장대응반 구성 의사환축 발생농가 주변 야생멧돼지 서식현황 조사 멧돼지 증검예찰구역(또는 관리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지원 지자체 방역 조치에 필요한 기술지원
유역·지방 환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생동물 폐사체 발생상황 모니터링 소독약품, 방역복, 시료 채취 물품 확보 실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SF 현장대응반 구성 멧돼지 증검예찰구역(또는 관리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지원 ASF 의심 개체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지자체 (시·도/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ASF 현장대응반 구성 의사환축 발생농가 주변 야생멧돼지 폐사체 예찰 강화 의사환축 발생농가 주변 소독 및 주변지역 출입통제 야생멧돼지 폐사체 소각·매몰 및 현장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및 인접 시·군 수렵장 운영 일시 중단 또는 멧돼지 수렵지역 제외 ASF 감염이 의심되는 야생멧돼지 폐사체 또는 의심개체 발령·접수 시 시료채취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또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 관할지역 양돈농장 차단방역 강화 등 방역부서 협조 요청 관내 야생동물구조센터 및 동물원 등에 상황 전파 멧돼지 증검예찰구역(또는 관리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지원 설치된 야생멧돼지 이동차단시설 점검, 보수 및 보강, 이동차단시설 취약구간(울타리 출입문, 교량하부, 배수로 등) 관리 강화
국립공원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SF 현장대응반 구성 국립공원 내 야생멧돼지 서식현황 합동조사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생 상황 모니터링(국립공원 및 국립공원 경계지역) ASF 감염이 의심되는 야생멧돼지 폐사체 또는 의심개체 발령 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또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에 신고 및 시료채취·사체(시료) 이송 등 협조
국립생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생멧돼지 서식현황, ASF 발생상황·확산예측 등 생태계 모니터링 협조
(사)야생생물 관리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SF 현장대응반 구성 야생멧돼지 ASF 예방·대응 적극 협조 수렵인 대상 ASF 대응 교육·홍보 수렵개체 혈액 등 시료송부
동물원 등 전시· 관람·보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SF 방역계획 이행상태 점검 및 방역물품 확보 의심개체 정밀 모니터링 및 이상증상 시 정밀검사 의뢰 사육 기관 내 방역 및 예찰 강화

III. 심각단계 발령 시 조치사항(국내 발생 시)

기관명	조치사항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ASF 상황반 운영 법부처 협조체계 가동 야생멧돼지 발생 및 확산방지대책 수립·시행(수색, 이동차단시설 설치, 포획 등) 야생멧돼지 ASF 진단결과 유관기관 신속 전파 야생멧돼지 ASF 대응수칙 대국민 홍보 강화 멧돼지 중점예찰구역(또는 관리지역) 설정 총기유보지역 지정 및 관리, 멧돼지 중점예찰구역(또는 관리지역) 인근 수렵장 운영 통제(생물다양성과) ※ 남은 음식물을 멧돼지 미끼역이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른 남은 음식물 이동제한 ASF 발생 사실 및 긴급 조치사항 언론발표 및 대응 울타리 등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등 관리지침 마련 현장대응반(지방청, 질병관리원, 자원관, 생태원 등) 구성·운영 총괄
국립야생동물 질병관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ASF 현장대응반 운영 및 기관별 대응현황 관리·지원 야생멧돼지 ASF 진단결과 유관기관 신속 전파 야생멧돼지 이동차단시설 설치노선 선정 및 관계기관 협의·통보 야생멧돼지 이동차단시설 설치(지자체 포함)·유지관리 관련 기술지원 야생멧돼지 ASF 정밀검사 계획 수립·시행(경도검사 포함) 멧돼지 중점예찰구역 현장 조사* 및 역학조사 * 멧돼지로부터 감염 가능성 및 환경시료 조사 등 멧돼지 중점예찰구역(또는 관리지역) 등 야생멧돼지 폐사체 전수 및 포획개체에 대해 ASF 진단 및 검사결과 전파 지자체 방역 조치에 필요한 기술지원 야생멧돼지 ASF 대응상황 해체 검토 및 건의
국립생물 자원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SF 현장대응반 운영 멧돼지 중점예찰구역(또는 관리지역) 등 야생멧돼지 서식동향 조사* * 개체수, 이동양상 등 개체군 동향에 대한 월별 모니터링 실시 멧돼지 중점예찰구역(또는 관리지역) 역학조사 지원 지자체 방역 조치에 필요한 기술지원
유역·지방 환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ASF 현장대응반 운영 지자체 현장대응반 운영상황 관리·감독 멧돼지 중점예찰구역(또는 관리지역) 역학조사 지원 멧돼지 중점예찰구역(또는 관리지역) 내 대응현황 정기점검(주·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생멧돼지 ASF 신고센터 상시 운영 야생멧돼지 이동차단시설 설치(광역울타리) 야생멧돼지 이동차단시설 설치(지자체 포함)·유지관리 관련 관계기관 협의
지자체 (시·도/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ASF 현장대응반 운영 멧돼지 중점예찰구역(또는 관리지역) 내 야생멧돼지 폐사체 예찰 강화 야생멧돼지 폐사체 소각·매몰 및 현장 관리 강화 야생멧돼지 이동차단시설 설치(1·2차 울타리) 및 유지관리 멧돼지 중점예찰구역(또는 관리지역) 등 야생멧돼지 폐사체 전수 및 포획개체에 대해 시료 채취,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및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 멧돼지 중점예찰구역(또는 관리지역) 관할 시·도 수렵장 운영 중단 ASF 대응 인력·장비 운용 등 비상대응 체계 유지 멧돼지 중점예찰구역(또는 관리지역) 출입통제 및 주요지점 소독조치 멧돼지 중점예찰구역(또는 관리지역) 관할 시·도 내 야생동물구조센터 및 동물원 등에 상황 전파 동물원 등 멧돼지 사육·전시시설 ASF 방역 강화 수렵 관련 종사자의 농장 출입 통제* * 불가피하게 출입하는 경우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1회용 방역복 착용, 출입 전후 소독 등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출입
국립공원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SF 현장대응반 운영 국립공원 내 야생멧돼지 서식현황 합동조사 국립공원 내 야생멧돼지 확산 차단대책 수립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생 상황 모니터링(국립공원 인근) ASF 감염이 의심되는 야생멧돼지 폐사체 또는 의심개체 발견 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또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에 신고 및 시료채취·사체(시) 이송 등 협조
국립생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생멧돼지 서식현황, ASF 발생상황·확산예측 등 생태계 모니터링 협조 현장대응반 운영 협조
야생동물구조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멧돼지 중점예찰구역(또는 관리지역) 내 야생멧돼지 구조활동 중단 및 구조신고 접수 시 환경부 보고 계류 또는 치료 중인 멧돼지 이동금지 및 시설 방역 강화 야생멧돼지 폐사체 반입 금지
야생생물관리 협회, 환경보전협회 등 관련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ASF 현장대응반 운영 정부, 지자체, 관련단체의 긴급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 수렵 관련 종사자의 농장 출입 통제* 협조 * 불가피하게 출입하는 경우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1회용 방역복 착용, 출입 전후 소독 등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수렵단체 관련 모임 금지 폐사체 수거, 시료채취 및 이송 협조 멧돼지 이동차단시설 유지·관리 지원 및 모니터링(생태계 영향분석, 위험구간 등) 수렵인 대상, 이동차단시설 관련 등 ASF 대응 교육·홍보
동물원 등 전시· 관람·보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근 지역 농장 및 야생멧돼지 ASF 발생 현황 점검 해당 전시·관람·보전시설 내 돼지류 전수조사 사육 시설 내 방역 및 예찰강화 감수성 동물의 이동 금지 및 전시중단 고려

소관 부서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연락처	전화	(044) 201-7241
	FAX	(044) 201-7261
※ 본 매뉴얼에 대하여 수정, 또는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상기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IV. 상황 해제

□ 위기경보가 “주의” 또는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농식품부) 시 야생 멧돼지 예찰, 상황반 운영 등 조사 및 대응 범위를 정하여 소속·산하 기관 및 지자체 등에 전파해야 한다.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4장에 관리지역 내 폐사체, 포획 및 수렵을 통해 시료를 수집하고 ASF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20일 동안 ASF가 검출되지 않거나 수집된 시료가 없고 이후 실시한 멧돼지 분변, 사체, 토양 등 환경시료 검사 결과 ASF 검출이 없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야생멧돼지 ASF 대응상황*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 위기경보가 하향 조정되어도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장에 따른 관리지역에 대해 “심각단계”에 준하여 대응상황 유지

○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할 시장·군수,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 관련 전문가가 의견 검토를 거쳐 대응상황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황 해제 이후에도 관리지역에 대한 예찰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